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016. 12.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입·정책기획관·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2016.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I. 세 입	3
(1) 토지대여료(일반회계)	6
(2) 건물대여료(일반회계)	9
(3) 기타재산수입(일반회계)	12
(4)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	14
II. 세 출	17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20
(2) 변화관리능력개발	35
(3)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45
(4)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사업	53
2. 통상정책국	59
<일반회계>	
(1)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62
(2) 국제기구분담금	70
(3) 통상협력정책지원	75
(4)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사업	79
3. 통상협력국	87
<일반회계>	
(1) 양자산업협력	90
(2)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98
(3)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104

4. 통상교섭실 109

<일반회계>

- (1)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112
- (2) 통상분쟁대응사업 120

정 책 기 획 관

세 입

□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 (B)	증 감	
				(B-A)	%
일반회계	229,962	160,357	187,986	27,629	17.2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관	항	목	2015결산	2016 예산 (A)	2017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29,962	160,357	187,986	27,629	17.2
11		재산수입	35,433	48,593	52,467	3,874	7.9
	51	관유물 대여료	11,915	13,588	15,712	2,124	15.6
	511	토지대여료	9,614	10,023	10,524	501	5.0
	512	건물대여료	2,301	3,565	5,188	1,623	45.5
	54	기타이지수입및재산수입	23,518	35,005	36,755	1,750	5.0
	545	기타재산수입	23,518	35,005	36,755	1,750	5.0
12		경상이전수입	193,040	111,097	134,852	23,755	21.3
	56	벌금 및 몰수금	1,600	745	1,200	455	61.0
	563	과태료	898	145	600	455	313.8
	565	과징금	703	600	600	-	-
	57	변상금 및 위약금	-	10	-	-	-
	572	위약금	-	10	-	-	-
	58	가산금	10	-	-	-	-
	581	가산금	10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91,430	110,342	133,652	23,310	21.1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191,430	110,342	133,652	23,310	21.1
13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96	45	45	-	-
	69	잡수입	79	45	45	-	-
	691	기타잡수입	79	45	45	-	-
	697	기타영업외수익	16	-	-	-	-
14		수입대체경비수입	625	622	622	-	-
	69	잡수입	625	622	622	-	-
	691	기타잡수입	625	622	622	-	-
15		관유물매각대	767	-	-	-	-
	72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767	-	-	-	-
	721	토지매각대	767	-	-	-	-

토지대여료(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토지대여료	7,022	10,023	10,524	501	5.0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토지대여료	3,848	4,457	6,000	12,821	5,717	7,251	6,460	10,023	7,022	9,614	-	-
(전년대비증가율)	-	-	55.9	187.7	△4.7	△43.4	12.9	38.2	8.6	△4.0	18.1	44.6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6년	10,023	○ 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 4,400,000천원											
		지역	임대료(원)		예상 면적(m²)		단가(원)		개월				
		▪ 군산1	384,862,800	=	320,719	×	100	×	12				
		▪ 군산2	319,669,200	=	532,782	×	50	×	12				
		▪ 군산3	31,564,140	=	105,213.8	×	25	×	12				
		▪ 군산4	8,023,719	=	1,288.33	×	519	×	12				
		▪ 김제	55,540,200	=	92,567	×	50	×	12				
		▪ 대불	714,386,164	=	875,473.24	×	68	×	12				
		▪ 동해	40,020,720	=	98,090	×	34	×	12				
		▪ 마산	2,288,793,240	=	615,267	×	310	×	12				
		▪ 울산	465,102,720	=	403,735	×	96	×	12				
		▪ 울춘	91,800,000	=	150,000	×	51	×	12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5,623,000천원											
		지역	임대료		임대 면적(m²)		단가 (원)		비 감면율		입주율		지분율
		▪ 천안	642,030,977	=	468,632	×	3,288	×	43%	×	95%	×	100%
		▪ 월전1	29,865,506	=	52,768	×	1,632	×	85%	×	40%	×	100%
		▪ 월전2	18,414,958	=	46,292	×	3,000	×	100%	×	20%	×	65%
		▪ 대불	671,574,996	=	1,170,576	×	720	×	84%	×	93%	×	100%
		▪ 오창	215,619,951	=	446,269	×	2,292	×	30%	×	83%	×	83%
		▪ 구미	28,279,102	=	329,433	×	1,548	×	13%	×	51%	×	82%
		▪ 구미부품	97,513,641	=	255,469	×	1,512	×	66%	×	50%	×	75%
		▪ 인주	122,257,851	=	159,457	×	1,728	×	58%	×	100%	×	75%
		▪ 사천	557,333,655	=	495,865	×	2,148	×	57%	×	100%	×	90%
		▪ 달성	21,976,045	=	104,187	×	1,332	×	23%	×	90%	×	75%
		▪ 장안1	84,718,571	=	418,156	×	2,796	×	24%	×	74%	×	40%
		▪ 장안2	38,316,106	=	368,977	×	3,636	×	14%	×	50%	×	40%
		▪ 당동	82,977,601	=	239,355	×	4,596	×	25%	×	87%	×	34%
		▪ 지사	310,611,309	=	298,070	×	4,308	×	34%	×	93%	×	75%
		▪ 오성	23,951,114	=	362,331	×	3,876	×	38%	×	11%	×	40%
		▪ 포항부품	10,682,449	=	327,240	×	1,524	×	7%	×	40%	×	75%
		▪ 익산부품	35,449,694	=	320,440	×	1,236	×	30%	×	39%	×	75%
		▪ 창원부품	8,155,148	=	71,368	×	5,412	×	6%	×	46%	×	75%
		▪ 어연	31,027,372	=	60,557	×	3,588	×	35%	×	100%	×	40%
		▪ 추팔	25,810,869	=	88,976	×	2,844	×	25%	×	100%	×	40%
		▪ 포승	15,597,643	=	95,773	×	3,564	×	32%	×	35%	×	40%
		▪ 현곡	92,593,431	=	500,710	×	3,012	×	19%	×	88%	×	36%
		▪ 미읍	92,294,394	=	331,909	×	5,268	×	15%	×	46%	×	75%
		▪ EEW	11,776,036	=	52,491	×	1,023	×	43%	×	100%	×	50%
		▪ 날코	174,759,354	=	29,668	×	11,550	×	100%	×	100%	×	50%
		▪ 천안5	11,925,808	=	336,208	×	2,484	×	40%	×	5%	×	70%
		▪ 문막	816,299	=	99,132		2,484	×	10%		5%		65%

'17년	10,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5,904백만원 *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입주기업수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5% 증가 편성 ○ 대불자유무역지역 : 704백만원 * 68원(㎡당 단가) × 863,223㎡(임대 예상면적) × 12월=704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62백만원 * 34원(㎡당 단가)×154,016㎡(임대예상면적)×12월=62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2,086백만원 * 276원/㎡,월 × 615,000㎡ × 12월 = 2,036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61백만원 * 51원(㎡당 단가) ×10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61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210백만원 * 70원(㎡당 단가) ×25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210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858백만원 * 177원(㎡/월) ×403,735.5㎡ ×12월 ×1.3(예상입주율) = 934 ○ 군산자유무역지역: 639백만원 * 임대료 면제기업의 임대료 납부 : 50%면제→임대료전액 납부(76백만원) 100%면제→50%면제(563백만원)
'18년	10,524	○ 상동
'19년	10,524	○ 상동
'20년	10,524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건물대여료(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건물대여료	3,512	3,565	5,188	1,623	45.5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물류창고, 청사 및 업무지원동 입주 기업에게 임대한 건물 임대료

○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건물대여료	2,029	1,460	2,029	1,506	2,084	1,808	2,120	1,950	3,512	2,301	-	-
(전년대비증가율)	-	-	-	31.5	2.7	20	1.7	7.8	65.6	18	17.5	19.3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6년	3,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자유무역지역 : 67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1,419원(㎡ 당평균단가)×2,172㎡×12월=37,000천원 * 업무지원동 : 1,555원(㎡ 당평균단가)×5,039㎡×12월=94,000천원 * 물류동 : 1,435원(㎡ 당평균단가)×8,948㎡×12월=154,000천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 376(㎡ 당평균단가)×47,443㎡×12월=214,000천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432(㎡ 당평균단가)×14,462㎡×12월=75,000천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15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및 식당동 : 2,678원(㎡ 당평균단가)×240㎡×12월=7,000천원 * 표준공장 임대료(‘16년 완공예정) : 148,000천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447,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A,D,E,F동 : 704원(㎡ 당평균단가)×23,468.30㎡×12월= 198,260천원 * 표준공장 B,C동 : 664원(㎡ 당평균단가)×9,087.50㎡×12월=72,409천원 * 청사동 : 3,510원(㎡ 당평균단가)×571.83㎡×12월=24,085천원 * 업무지원동 : 2,970원(㎡ 당평균단가)×1,458.83㎡×12월=51,993천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15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384원(㎡ 당평균단가)×4,162㎡×12월 = 19,000천원 * 표준공장 2동: 325원(㎡ 당평균단가)×6,863㎡×12월 = 26,000천원 * 표준공장 3동: 344원(㎡ 당평균단가)×12,207㎡×12월 =50,000천원 * 청사동 지원시설 : 1,909원(㎡ 당)×401㎡×12월 = 9,000천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1,379,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3호동 : 850(㎡ 당평균단가)×46,550㎡×12월=475,000천원 * 표준공장8호동 : 1,066원(㎡ 당평균단가)×18,910㎡×12월=242,000원 * 표준공장9호동 : 1,145원(㎡ 당평균단가)×18,263㎡×12월=251,000천원 * 공공건물 : 1,518원(㎡ 당평균단가)×17,072㎡×12월=311,000천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68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5,086원(㎡ 당평균단가) × 2057.23㎡×12월=125,000천원 * 표준공장(경공업동) : 1,005원(㎡ 당평균단가)×27,907㎡×12월=336,000천원 * 표준공장(중공업동) : 1,225원(㎡ 당평균단가)× 8,319㎡×12월=122,000천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 7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 619원(㎡ 단가)×3,114.08㎡×12월=23,000천원

'17년	5,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불자유무역지역 : 10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면적: 5,691.01㎡) : 47,290천원 * 청사동 및 업무지원동(면적:1,396.95㎡) : 54,527천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10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384원(㎡당평균단가)×4,162㎡(임대예상면적)×12월=19백만원 * 표준공장 2동 325원(㎡당평균단가)×6,863㎡(임대예상면적)×12월=26백만원 * 표준공장 3동 344원(㎡당 평균단가)×12,207㎡(임대예상면적)×12월 = 5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1,909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 = 9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2,69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3호동 : 43,430.18㎡ × 876(평균임대료) × 12 = 456백만원 * 표준8호동 : 17,230.33㎡ × 1,049(평균임대료) × 12 = 216백만원 * 표준9호동 : 17,021.95㎡ × 1,049(평균임대료) × 12 = 214백만원 * 신축5개동 : 121,364㎡ × 1,049(평균임대료) × 12 = 1,527백만원 * '13년 임대료 공고기준 8.9호동 평균임대료 * 공공 건물 : 280백만원 (나눔관,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 울산자유무역지역 : 1,53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5080㎡/월(예상) * 1342.57㎡ * 1.0(예상임주율) * 12월 = 81 * 표준공장(경공업동) : 3565㎡/월(예상) * 27,907㎡ * 1.0(예상임주율) * 12월 = 1,194 * 표준공장(중공업동) : 2580㎡/월(예상) * 8,319㎡ * 1.0(예상임주율) * 12월 = 257 ○ 군산자유무역지역 : 59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2,174,6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9백만원 * 업무지원동 : 7,976,2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105백만원 * 물류동 : 12,238,190원(월금액)×12월=147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7,096,31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26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7,399,050원(월금액)×12월×2개동=89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16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0원(㎡당 임대료) × 25,000㎡ × 12월=162백만원
'18년	5,188	○ 상동
'19년	5,188	○ 상동
'20년	5,188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확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타재산수입(일반회계)

< 회계명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기타재산수입	21,896	35,005	36,775	1,750	5.0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보조금·출연금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발생 이자수입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재산수입	20,161	7,967	19,152	27,631	19,635	16,165	19,634	39,325	21,896	23,518	-	-
(전년대비증가율)	-	-	△5	24.7	2.5	△41.5	-	143	11.5	△40.1	2.2	21.5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6년	35,005	○ 연도별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비 총액 (단위:백만원)																						
		연도별	2010	2011	2012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13	2014	2015		2,070,936	2,107,194	2,214,275								
		연도별	2010	2011	2012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13	2014	2015																			
	2,070,936	2,107,194	2,214,275																					
○ 연도별 이자발생액 (단위:백만원, %)																								
<table><tr><th>연도별</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r><tr><td>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td><td>2,591,294</td><td>2,726,075</td><td>2,427,339</td><td>2,089,065</td><td>2,160,735</td></tr><tr><td>이자수입액 (결산액)</td><td>27,631</td><td>16,165</td><td>39,325</td><td>-</td><td>-</td></tr><tr><td>반납률</td><td>0.0107</td><td>0.0059</td><td>0.0162</td><td>-</td><td>-</td></tr></table>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이자수입액 (결산액)	27,631	16,165	39,325	-	-	반납률	0.0107	0.0059	0.0162	-	-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이자수입액 (결산액)	27,631	16,165	39,325	-	-																			
반납률	0.0107	0.0059	0.0162	-	-																			
○ '14'15년 사업비 평균(2,160,735백만) x '14년도 반납률(0.0162) = 35,005천원 * '14년도부터 RCMS가 전면적용되어 과거('13년 이전)에 비해 이자 반납액이 증가하였으므로 '14년도 반납률만 적용																								
'17년	36,755	▪ 1. 연도별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비 총액 (백만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70,936	2,107,194	2,214,275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70,936	2,107,194	2,214,275																
		▪ 2. 연도별 이자발생액 (백만원, %)																						
<table><tr><th>연도별</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r><tr><td>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td><td>2,591,294</td><td>2,726,075</td><td>2,427,339</td><td>2,089,065</td><td>2,160,735</td></tr><tr><td>이자수입액 (결산액)</td><td>27,631</td><td>16,165</td><td>39,325</td><td>-</td><td>-</td></tr><tr><td>반납률</td><td>0.0107</td><td>0.0059</td><td>0.0162</td><td>-</td><td>-</td></tr></table>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이자수입액 (결산액)	27,631	16,165	39,325	-	-	반납률	0.0107	0.0059	0.0162	-	-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이자수입액 (결산액)	27,631	16,165	39,325	-	-																			
반납률	0.0107	0.0059	0.0162	-	-																			
▪ 3. '15'16년 사업비 평균(2,124,900백만) x '14년도 반납률(0.0162) x 증가예상을 5% 가산 = 36,755백만원 * '14년도부터 RCMS가 전면적용되어 과거('13년 이전)에 비해 이자 반납액이 증가하였으므로 '14년도 반납률만 적용																								
'18년	36,755	○ 상동																						
'19년	36,755	○ 상동																						
'20년	36,755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확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

< 회계명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기타경상이전수입	164,081	110,342	133,652	23,310	21.1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보조금·출연금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재산수입, 공동부담금 채납에 따른 연체료
- 관사 임대보증금 반납금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경상이전수입	60,557	87,522	60,557	99,835	65,399	121,592	205,623	203,910	164,081	191,430	-	-
(전년대비증가율)	-	-	-	14.1	8	21.8	21.44	67.7	△20.2	△6.1	5.1	24.3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6년	110,342	○ 보조금·출연금 집행잔액 및 정산금 : 110,327,000천원																						
		▪ 1. 연도별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비 총액																						
		(단위:백만원)																						
		<table><tr><th>연도별</th><th>2010</th><th>2011</th><th>2012</th></tr><tr><td rowspan="3">보조금· 출연금 사업비총액</td><td>2,514,180</td><td>2,668,408</td><td>2,783,742</td></tr><tr><th>2013</th><th>2014</th><th>2015</th></tr><tr><td>2,070,936</td><td>2,107,194</td><td>2,214,275</td></tr></table>	연도별	2010	2011	2012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13	2014	2015	2,070,936	2,107,194	2,214,275								
		연도별	2010	2011	2012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총액	2,514,180	2,668,408	2,783,742																			
			2013	2014	2015																			
			2,070,936	2,107,194	2,214,275																			
		▪ 2.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 발생액(집행잔액 및 정산금 반납)																						
		(단위:백만원)																						
<table><tr><th>연도별</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r><tr><td>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td><td>2,591,294</td><td>2,726,075</td><td>2,427,339</td><td>2,089,065</td><td>2,160,735</td></tr><tr><td>기타경상 이전수입 (결산)</td><td>99,835</td><td>121,592</td><td>107,327</td><td>-</td><td>-</td></tr><tr><td>반납률</td><td>0.0385</td><td>0.0446</td><td>0.0442</td><td>-</td><td>가중평균 0.0444</td></tr></table>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기타경상 이전수입 (결산)	99,835	121,592	107,327	-	-	반납률	0.0385	0.0446	0.0442	-	가중평균 0.0444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591,294	2,726,075	2,427,339	2,089,065	2,160,735																			
기타경상 이전수입 (결산)	99,835	121,592	107,327	-	-																			
반납률	0.0385	0.0446	0.0442	-	가중평균 0.0444																			
▪ 3. '16년도 반납 예상액 : 110,327,000천원																								
* '14-'15년 평균사업비(2,160,735백만원) × 최근3개년 가중평균 반납률(0.0444) + '15년도 반납률 증가추세를 고려한 조정계수(15%)																								
* 기술료 수입이 '15년 1월부로 '산촉기금'으로 이관되어 '14,'15년도에 비하여 기타경상 이전수입 크게 감소 (1천억원 수준 감소)																								
○ 군산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 12,000천원																								
* 토지 및 건물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 1백만원×12개월 = 12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임대료 , 공동부담금 연체료 : 1,000천원																								
* 토지, 건물 재산수입(144백만원)×1%(추정비율)																								
* 공동부담금(7백만원)×1%(추정비율)																								
○ 마산자유무역지역 : 2,000천원																								
* 임대료(3,445백만원)×1%(국유재산법 요율)×5%(추정비율)=1700천원																								
* 공동부담금(400백만원)×3%(국세징수법 요율)×5%(추정비율)=600천원																								

'17년	133,652	○ 장·차관 관사 임대보증금 반납금 : 620,000천원																								
		○ 출연·보조금 환수액 : 131,879,000천원																								
		(단위:백만원)																								
		<table><tr><th>연도별</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예상)</th><th>2017(요구)</th></tr><tr><td>사업비 총액</td><td>2,070,936</td><td>2,107,194</td><td>2,214,275</td><td>2,486,363</td><td>2,343,147</td></tr><tr><td>출연·보조금 정산환수액</td><td>120,765</td><td>106,164</td><td>85,967</td><td>110,327</td><td>131,879</td></tr><tr><td>반납율</td><td>5.83%</td><td>5.04%</td><td>3.88%</td><td>4.44%</td><td>5.63%</td></tr></table>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예상)	2017(요구)	사업비 총액	2,070,936	2,107,194	2,214,275	2,486,363	2,343,147	출연·보조금 정산환수액	120,765	106,164	85,967	110,327	131,879	반납율	5.83%	5.04%	3.88%	4.44%	5.63%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예상)	2017(요구)																			
		사업비 총액	2,070,936	2,107,194	2,214,275	2,486,363	2,343,147																			
		출연·보조금 정산환수액	120,765	106,164	85,967	110,327	131,879																			
		반납율	5.83%	5.04%	3.88%	4.44%	5.63%																			
		* ('17년 계획액) 최근 3년('13-'15)간 보조·출연금 정산환수액 예상반납율 반영																								
		○ 임대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 1,153,000천원																								
(단위:백만원, %)																										
<table><tr><th>연도별</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예상)</th><th>2017(요구)</th></tr><tr><td>발생액</td><td>827</td><td>1,163</td><td>1,470</td><td>15</td><td>1,153</td></tr></table>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예상)	2017(요구)	발생액	827	1,163	1,470	15	1,153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예상)	2017(요구)																					
발생액	827	1,163	1,470	15	1,153																					
* ('17년 계획액) 최근 3년('13-'15)간 연체료 발생액 평균 반영																										
'18년	133,652	○ 상동																								
'19년	133,652	○ 상동																								
'20년	133,652	○ 상동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사항 없음

세 출

정책기획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2,832	2,997	3,005	8	0.3
○변화관리능력개발	400	380	353	△27	△7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	528	531	531	-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2,706	1,580	1,571	△9	△0.5
소계	6,466	5,488	5,460	△28	△0.5
총계	6,466	5,488	5,460	△28	△0.5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2,382	2,997	3,005	8	0.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1 - 501

* 담당자 : 정책기획관(윤갑석), 정보관리담당관(김미애, 044-203-5550), 주무관(유영신, 044-203-555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1~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사업목적

-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 등)의 고도화와 유지보수,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행정·정책업무 수행을 지원
-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16)1,407 → (‘17)1,790백만원(+383)

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6) - → (‘17)400백만원

-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우리 부 정보화사업의 방향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시스템구축 계획 수립
- ⇒ 유형(기획), 비목(일반연구비260-01)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수석 컨설턴트	책임 컨설턴트	전임 컨설턴트
투입 인력(MM)	5	10	4
월 평균 일수(일)	21.0		
노임 단가(원/일)	411,642	373,593	276,160
인건비(원)	43,222,410	78,454,530	23,197,440
직접인건비합계	144,874,380		
제 경비	직접인건비×11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 경비]×20%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365,083,438		
총 운영비(VAT포함)	401,591,781		

②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16)569 → ('17)560백만원

◆ 통합조직도 관리기능 및 DB 품질 고도화 : 112백만원

- 통합조직도의 비표준 코드 데이터를 행정표준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준코드를 이용한 재구축 실시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통합관리 및 인증기능 제공을 위해 보안성 강화 및 성능개선을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데이터 이관
- 기존 시스템 노후화 등에 따른 시스템 전면 재구축 필요

⇒ 유형(구축비[추가],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비목(일반연구비/260-01)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290	0.65	1	1.075	-	19,989,784
설계	124,609		290				-	25,250,456
구현	166,145		290				0.8	26,933,766
시험	129,801		290				0.8	21,042,040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12,791,416

◆ 업무포털 DB 품질개선 : 85백만원

- 업무포털 데이터의 비표준 코드 데이터를 행정표준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시스템간 원활한 정보자원 교환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 업무포털 내에 구축된 산재되어 있는 정책협력 기능을 통합하고 미사용 백업성 데이터의 삭제, 게시판별 통합 데이터 테이블의 분리를 통한 데이터 성능개선 필요

⇒ 유형(구축비[추가],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비목(일반연구비/260-01)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220	0.65	1	1.075	-	15,164,664
설계	124,609		220				-	19,155,519
구현	166,145		220				0.8	20,432,512
시험	129,801		220				0.8	15,962,927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85,565,902

◆ 사업관리 업무연락방 이관 및 개편 : 70백만원

- 노후화된 사업관리 업무연락방 시스템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표준 준수를 통한 유지보수성 제고
- 신규기능 추가, 기존기능 개선 및 시스템의 이중화 구성을 통한 안정성 및 업무효율성 향상

⇒ 유형(구축비[추가],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비목(일반연구비/260-01), 통합전산센터 이체대상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180	0.650	1.00	1.075	-	12,407,452
설계	124,609		180				-	15,672,697
구현	166,145		180				0.8	16,717,510
시험	129,801		180				0.8	13,060,577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70,008,465

◆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이관 및 ActiveX 제거 : 40백만원

-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재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 및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 노후화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합전산센터 G-Cloud에 입주시켜 보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 MS社 인터넷익스플로어(IE)에서만 동작하는 Active X를 제거하여 웹호환성 확보 및 보안강화

※ 행정자치부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Active X 제거 이행계획 수립

⇒ 유형(구축비[추가],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비목(일반연구비/260-01), 통합전산센터 이체대상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104	0.650	1.00	1.075	-	7,168,750
설계	124,609		104				-	9,055,336
구현	166,145		104				0.8	9,659,006
시험	129,801		104				0.8	7,546,111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40,449,335

◆ **역량평가 이관 및 개편 : 42백만원**

- 역량평가 시스템 평가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며 노후화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합 전산센터 G-Cloud에 입주시켜 보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

⇒ 유형(구축비[추가],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비목(일반연구비/260-01), 통합전산센터 이체대상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110	0.650	1.00	1.075	-	7,582,332
설계	124,609		110				-	9,577,759
구현	166,145		110				0.8	10,216,256
시험	129,801		110				0.8	7,981,463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42,782,951

◆ **노후장비 교체 : 211백만원**

-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내용년수가 경과된 전산장비 교체

⇒ 유형(구축비[추가], 기존 노후장비 교체), 비목(자산취득비/430-01)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업무용서버	6	19,000,000	114,000,000
스토리지	1	30,000,000	30,000,000
L4스위치	2	30,000,000	60,000,000
SAN스위치	1	2,000,000	2,000,000
L2스위치	5	1,000,000	5,000,000
합 계			211,000,000

③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6)822 → ('17)810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운영 : 584백만원**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23개,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6개 운영, Help desk 운영,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관리 등

⇒ 유형(위탁운영), 비목(관리용역비/210-15)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 인력		12	24	12	12
노임단가		373,593	276,160	221,375	190,787
인건비		94,145,436	139,184,640	83,679,750	27,045,689
월평균일수		21.0			
직접인건비합계		337,194,900			
제경비	직접인건비×50%	168,597,45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5%	25,289,618			
운영비		531,081,968			
총 운영비(VAT포함)		584,190,164			

◆ HW 유지보수(업무용 서버 등 215식) : 133백만원

- '16년 : 1,988백만원(도입비, 132식) × 4.0%(유지보수율) = 79백만원
- '17년 : 610백만원(도입비, 83식) × 8.8%(유지보수율) = 54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HW 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210-15)

◆ 상용SW 유지보수(PMS 등 59식) : 93백만원

- '16년 : 1,281백만원(도입비, 47식) × 4.0%(유지보수율) = 51백만원
- '17년 : 479백만원(도입비, 12식) × 8.8%(유지보수율) = 42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상용SW 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210-15)

④ 디지털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 ('16)16 → ('17)20백만원

- 도서관리운영시스템 외 4개 연계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 전자도서관 시스템, RFID 운영시스템, 국내학술지 목차정보서비스, 메타 검색프로그램

◆ 상용SW 유지보수(도서관리운영시스템 등) : 20백만원

- ▶ '16년 : 115백만원(도입비)×14%(유지보수율) = 16백만원
- ▶ '17년 : 115백만원(도입비)×17.5%(유지보수율) = 20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210-15)

유지보수 항목	금액	합계
도서관리운영시스템	12백만원	20백만원 (도입비115×요율17.5%)
RFID운영시스템		
전자도서관시스템	4백만원	
국내 학술지 목차정보서비스	4백만원	
메타 검색프로그램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16)1,120 → ('17)745백만원(△375)

①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16)280 → ('17)281백만원

- 산업부 출연/민간보조금 실집행기관의 재정집행 데이터를 연계하여 CLEAN시스템에 집계함으로써 재원의 통합관리 실현 및 기재부 d-Brain시스템과의 연계운동을 통한 국가 재정관리 표준화 선도

◆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201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사업출연금/350-02)

구분	내역	금액
응용프로그램 (SW)유지보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비 : 177백만원(고급기술자 1명 5M/M, 초급기술자 1명12M/M, 제경비 60%, 기술료 10%, 부가세 10%) 변동비(기능개선) : 20백만원(기능점수 80점) 직접경비 : 4백만원 ※ 고정비 및 변동비 산정에 의한 방식으로 계산	201,000,000
합 계		201,000,000

◆ 하드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60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사업출연금/350-02)

장비명	도입비	유지보수비
서버 2식, SAN스위치 1식, 스토리지 1식	358,267,500	31,000,000
솔루션전자서명 암호화, DBMS, WEB, WAS, EAI 7식	259,500,000	24,700,000
L4스위치 1식, VPN 8식	36,000,000	4,300,000
합 계	653,767,500	60,000,000

◆ CLEAN시스템 운영비 : 20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사업출연금/350-02)

- 업무관련 회의 : 20천원×10명×20회(4백만원)
- 공동운영기관 워크샵 개최 : 80천원×200명×1회(16백만원)

②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유지보수 : ('16)100 → ('17)100백만원

- 국제 원자재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찰·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주요 16개 품목별 상시경보시스템 운용, 산업원자재지수 운용
- 원자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분석하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경보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처

◆ 개발SW 유지보수(모니터링시스템, 경보시스템, 산업원자재지수) : 26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210-15)

- '16년 : 190백만원(도입비)×13.7%(유지보수율) = 26백만원
- '17년 : 190백만원(도입비)×13.7%(유지보수율) = 26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OracleLinux 및 OracleRDBMS11GR2 라이선스업데이트) : 5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210-15)

- '16년 : 13백만원(도입비)×38.5%(유지보수율) = 5백만원
- '17년 : 13백만원(도입비)×38.5%(유지보수율) = 5백만원

◆ HW 유지보수(DB보관센터 이용료, 서버운영 및 기술지원료) : 5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210-15)

- '16년 : 12백만원(도입비)×33.3%(유지보수율) = 4백만원

- '17년 : 7백만원(도입비)×64.3%(유지보수율) = 5백만원

◆ 기타운영지원비 : 64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일반연구비/260-01)

③ 광업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16)200 → ('17)314백만원

- 광업권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광업지적검색 서비스의 상용SW, 개발SW 유지보수

- 광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민원응대, 사용자지원 등 시스템 운영

-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문의 등 대응을 위한 상주인력의 Help Desk 운영

- (필요성)

· 광업정보시스템은 구축시 인터넷익스플로어(IE) 8버전(32Bit)에 최적화 되어 구현함에 따라 구동되지 않는 IE 64Bit 및 타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에서의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지원을 위한 Active X 대체솔루션 구입

· 광업권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업무 지원, 온라인민원 발급서비스 이용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위해 중급이상 기술자의 상주가 반드시 필요함

◆ 운영 및 유지보수 : ('16)162→('17)168백만원

▶ 개발SW 유지보수 : 94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210-15)

* '16년 : 679백만원('09~15년 도입비)×13%(유지보수율) = 88백만원

* '17년 : 727백만원('09~16년 도입비)×13%(유지보수율) = 94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 14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210-15)

* '16년 : 123백만원('09~15년 도입비)×11.4%(유지보수율) = 14백만원

* '17년 : 123백만원('09~16년 도입비)×11.4%(유지보수율) = 14백만원

▶ 위탁운영 : 60백만원

⇒ 유형(위탁운영), 비목(관리용역비/210-15)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 인력		0	0	0	0	12
노임단가		408,995	376,262	272,075	221,371	189,174
인건비						47,671,848
월 평균일수		21				
직접인건비합계		47,671,848				
제 경비	직접인건비×10%	4,767,185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5%	2,621,952				
운영비		55,060,984				
총 운영비(VAT포함)		60,567,083				

◆ 상용SW 구입비 : ('17)146백만원

- 광업정보시스템의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한 Active X 제거 및 대체 솔루션 구입·설치·개발

⇒ 유형(구축비[추가]), 비목(자산취득비/430-01)

분 류	내 역	금액(백만원)
온라인민원발급시스템	재증명발급 솔루션	70
	웹보안 솔루션	50
	리포팅 툴	26

④ 비관세장벽이력시스템 : ('16)40 → ('17)40백만원

- 정보입수에서 비관세장벽 완화·해소를 위한 최종단계까지 해외 비관세장벽 일괄지원 체계 마련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기능변경·추가·보완·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 수행
-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후속조치 DB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대응이력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 부처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 협업 대응 가능

⇒ 유형(위탁운영), 비목(관리용역비/210-15)

NO	구 분(담당)	등급	단가(M/M)	인원	투입MM	공 급 금 액
1	PM(사업관리)	중 급	4,648,791	1	1	4,648,791
2	프로그램 개선/ 유지보수지원/ HelpDesk지원/ 인프라지원	초 급	3,972,654	1	3.5	13,904,289
직 접 인 건 비		투입인력 (4.5 M/M)				18,553,080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65%적용				12,059,502
기 술 료		(직접인건비+ 제경비) * 19%				5,816,391
부가 가 치 세		(직접인건비+ 제경비 + 기술료) * 10%				3,642,897
총 합 계(VAT포 함)						40,071,869

⑤ 무역구제업무시스템 유지보수 : ('16) - → ('17)10백만원

- 무역구제업무시스템은 무역위원회 설립('87년) 이후 그 간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조사자료를 DB로 구축하고,
- 무역위원회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관련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조사 업무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4~'15년에 걸쳐 구축한 정보시스템임(총사업비:374백만원)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경쟁심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덤핑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외국의 저가제품 수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무역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동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지원 필요

◆ 개발SW 유지보수 : 10백만원

- '16년 : -
 - '17년 : 100백만원(도입비)×10%(유지보수율) = 10백만원
- ⇒ 유형(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210-15)

○ 정보보호체계 구축 :

(‘16)470 → (‘17)470백만원(-)

① 정보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56백만원

- 통합 보안솔루션(유해사이트차단·내부정보유출방지·방화벽·L3스위치 이중화 등)을 구축하여 사이버 침해 예방 및 사고시 효과적인 대응

⇒ 유형(정보화제도운영), 비목(자산취득비/430-01)

항목	내역	금액(백만원)
서버팜 방화벽 이중화	2EA × 25,000,000원	50
서버팜 스위치(L3) 이중화	1EA× 10,000,000원	10
유해사이트차단 이중화	1EA × 50,000,000원	50
서버접근통제 솔루션	2EA × 23,000,000원	46
합 계		156

② 구글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도입 : 70백만원

- 구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구글 검색엔진(Google)에 부내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 유형(정보화제도운영), 비목(자산취득비/430-01)

항목	내역	금액(백만원)
모니터링 솔루션	1EA × 50백만원	50
H/W	1EA(외부망) × 20백만원	20
합 계		70

③ 개인정보 오·남용 점검시스템 도입 : 64백만원

- 부내 외부망의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알람 기능 강화

⇒ 유형(정보화제도운영), 비목(자산취득비/430-01)

항목	내역	금액(백만원)
모니터링 솔루션	1EA × 44백만원	44
H/W	1EA(외부망) × 20만원	20
합 계		64

④ 백신구입 : 50백만원

- 부내 PC 및 정보시스템 서버 보호용 보안프로그램 구입 및 라이선스 유지
- ⇒ 유형(정보화제도운영), 비목(자산취득비/430-01)

항목	내역	금액(백만원)
백신	2050대(PC)×2.1만원(V3)	41
	29대(서버)×32만원(V3)	9
합 계		50

⑤ 패치관리시스템(PMS) : 50백만원

- 사이버위기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OS 업데이트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패치관리시스템을 도입
- ⇒ 유형(정보화제도운영), 비목(자산취득비/430-01)

항목	내역	금액
패치관리시스템	1EA(업무망,외부망) × 50백만원	50백만원
합 계		50백만원

⑥ 통상정보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 50백만원

- 통상정보시스템 활성화(전 부처 유통)에 따른 담당자별 모듈 배포(100명 추가)
- ⇒ 유형(구축비[추가]), 비목(자산취득비/430-01)

장비명	내역	금액(백만원)
암호모듈	0.5백만원 * 100개 * 담당자 1인 1모듈(통상실·국) 180명, 통상관련 부서 20명, 현 100개 확보	50

⑦ 내PC지키미 도입 : 30백만원

- PC보안 상태점검 및 제거를 위해 관리자가 강제로 내PC지키미를 실행하고 조치결과의 통계 및 보고서 기능 등이 추가된 내PC지키미 도입
- ⇒ 유형(정보화제도운영), 비목(자산취득비/430-01)

항목	내역	금액
내PC지키미	2050대(PC) × 15,100	30백만원
합 계		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산업통상자원분야 정보화현황분석, 중장기 전략목표 및 세부과제 추진방향 정립으로 체계적·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등)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고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
 - CLEAN시스템, 광업정보시스템 등 정책업무 수행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
- 정보보호체계 구축
 - 다양한 보안솔루션(방화벽, 침입탐지,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내부 IP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분석할 사이버 침해 사고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2,832	2,997	3,005	8	0.3
▪ 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 및 유지보수	1,255	1,407	1,790	383	27.2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	1,202	1,120	745	△375	△33.5
▪ 정보보호체계 구축	375	470	470	-	-
□ 비목(합계)	2,832	2,997	3,005	8	0.3
○ 관리용역비(210-15)	-	930	1,084	154	16.6
○ 일반연구비(260-01)	1,851	1,170	813	△357	△30.5
○ 민간경상보조(320-01)	35	-	-	-	-
○ 사업출연금(350-02)	219	280	281	1	0.4
○ 자산취득비(430-01)	727	617	827	210	34.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4.07)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11.20) ▪ 정보보호체계(4.70)
'17	3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7.90)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7.45) ▪ 정보보호체계(4.70)
'18	3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8.00)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11.00) ▪ 정보보호체계(6.00)
'19	3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8.00)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11.00) ▪ 정보보호체계(6.00)
'20	3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18.00)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지원(11.00) ▪ 정보보호체계(6.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 제5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00)
 -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5)
 -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기본계획 수립('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산업통상자원행정 정보시스템구축	32.75	31.59	28.77	29.97	30.0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이월(405백만원) : 통상정보자료관리시스템구축, 업무자료 분류체계 자동화프로그램개발 사업 등이 보안시스템 업무협의 및 공개경쟁절차 준수에 인해 사업기간 미종료로 이월 발생
- '13년 불용(105백만원) : 예산절감액 및 '13년 지식경제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 '14년 이월(2백만원) : 디지털도서관운영유지보수사업 미종료로 이월 발생
- '14년 불용(65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 '15년 불용(47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32.75 (-)	1.25 (-)	7.97 (-)	41.97 (-)	36.49 (-)	4.05 (-)	1.43 (-)
'14년	31.59 (-)	4.05 (-)	- (-)	35.64 (-)	34.97 (-)	0.02 (-)	0.65 (-)
'15년	28.77 (-)	0.02 (-)	- (-)	28.79 (-)	28.32 (-)	- (-)	0.47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14회계연도) 결과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세부사업) 內 “신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내역사업)” 즉시 폐지
- '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15회계연도) 결과 : 보통

평가지기	회계/기금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2016년도	일반	66.0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변화관리능력개발(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변화관리능력개발	400	380	353	△27	△7

* 사업코드 : 21 - 11 - 00 - 110 - 116 - 7100 - 7132 - 303

* 담당자 : 정책기획관(윤갑석), 창조행정담당관(손호영, 044-203-5530), 주무관(최진경, 044-203-55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5~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및 협력기관의 변화관리역량 강화와 산업·통상·자원 분야 변화관리 과제추진 및 변화관리능력 개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변화관리 교육-학습-연구체계 구축으로 변화-쇄신의 체질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창조적 조직 문화 정착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평가 및 교육 필요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선제적 갈등대응시스템을 확립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3억원

- 즐겁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사업: 4,400만원
 -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리더십, 대인관계, 문화, 건강 강좌 등)
 - * 자기개발 강좌 2,400만원 = 200만원×12회
 - * "일버리기, 똑똑일 프로젝트" 업무혁신 강좌 2,000만원 = 200만원 x 10회
- 창의적인 정책생산을 위한 여건 조성사업: 3,220만원
 - 부내 크로스미팅 지원 : 720만원
 - * 720만원 = 30만원 x 2팀 x 12회
 - 국내외 변화관리 모범 기관·기업 등 연수 : 2,500만원
 - * 해외연수 2,500만원 = 250만원×10명
-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 1,380만원
 - 분기별 우수부서 : 1080만원
 - * 1080만원 = (100만원+70만원+50만원+50만원) x 4회
 - 올해의 우수부서 : 220만원
 - * 220만원 = (100만원+70만원+50만원) x 1 회
 - 올해의 산업통상자원인 : 80만원
 - * 포상금 : 60만원 = 30만원 x 2명
 - * 상패제작 : 20만원 = 10만원 x 2명
- 정부 3.0, 공공기관 및 창조행정 업무 지원 : 300 만원
 - 공공기관 임원회의 및 정책자문위 운영 : 300만원
 - * 회의장 임차료 : 150만원 x 2회

② 유관기관 역량평가 과제개발 : 0.42억원

○ 역량평가과제 개발 : 42백만원

- * 평가과제 1개 set 개발비 21백만원 * 2개 Set = 42백만원
(set당 4개 세부평가과제로 구성)

③ 규제심사 및 갈등관리 지원 : 2.18억원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5,600만원

- 규제개혁위원회(횟수 및 참석율은 '14년도 기준) : 4,680만원

- * (회의) 14명×15회×25만원×0.8(참석율) = 4,200만원
- * (회의장 임차료) 30만원×16회 = 480만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920만원

- * (대면회의) 10명×4회×25만원×0.8(참석율) = 800만원
- * (회의장 임차료) 30만원×4회 = 120만원

○ 규제개혁 교육 및 갈등관리 교육 : 500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전체교육 : 200만원

- * 강사료 40만원 x 5회 = 200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브라운백 미팅 : 300만원

- * 75만원(강사료 30만원 + 도시락구입비용 45만원) x 4회 = 300만원

○ 규제개혁 대표사례 등 홍보물 제작 : 3,900만원

- 산업, 에너지 등 업종별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 3,900만원

- * 업종 5개 부문× 260만원 x 3회 = 3,900만원

○ 산업, 에너지 규제비용분석 및 규제개혁방안 연구용역 : 11,800만원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 비용, 편익분석 : 5,000만원

- * 규제비용분석 대상 법령 20건 x 건당 250만원 = 5,000만원

- 산업,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방안 연구 : 6,800만원

- * 업종별 2건 x 건당 3,400만원 = 6,800만원

□ 지원 필요성

- 변화관리 교육-학습-연구체계 구축으로 변화-쇄신의 체질화 유도 및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역량 강화, 즐거운 일터 분위기 조성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성과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평가 및 교육 필요
- 공공기관은 에너지 수급이나 안전관리 업무 및 무역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총량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 엄밀한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분석 필요
- * 신설·강화 규제 도입시 그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
- 규제개선 과정에 국민·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중 → 답변 내용 중 ‘소명’* 대상 과제는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논의하도록 되어있어 개최횟수 확대 필요
- * 부처의 중장기검토 및 불수용 답변 중 국조실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소관 1급 명의로 소명 의무 부과
- 규제개혁의 수요자인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규제개선 외에, 부처간에 연결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 → 신산업분야 창업 등 분야별로 부처간 연결규제를 연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 변화관리능력개발	274	380	353	△27	△7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120	90	93	3	3
▪ 유관기관 역량강화	42	42	42	-	-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112	248	218	△30	△12
☐ 비목	274	380	353	△27	△7
▪ 일반수용비(210-01)	55	89	118	29	32
▪ 임차료(210-07)	-	0.3	4	3.7	1233
▪ 기타운영비(210-16)	12	20	-	△20	△100
▪ 국내여비(220-01)	-	5	5	-	-
▪ 국외여비(220-02)	21	14	15	1	7
▪ 사업추진비(240-01)	20	22	21	△1	△4.5
▪ 연구개발비(250-00)	154	0	-	-	-
▪ 정책연구비(260-02)	0	218	176	△42	△19
▪ 포상금등(310-03)	12	10	14	4	4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항상 연구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인재 양성
- 국민과 기업을 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인의 상을 유지·발전시키고 끊임없는 창조적 혁신을 추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48
'17	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38
'18	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38
'19	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38
'20	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0.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2.3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변화관리능력개발 및 유관기관 역량강화 제도 운영

- 변화관리 능력개발 :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회의 의결사항
- 유관기관 역량강화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 평가에 대한 규정

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지원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변화관리능력개발	21	26	40	38	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09	-	-	1.5	1.5	-	-
	(209)	(-)	(-)	(1.5)	(1.5)	(-)	(-)
'14년	257	-	-	257	220	-	0.37
	(257)	(-)	(-)	(257)	(220)	(-)	(0.37)
'15년	4.00	-	-	4.00	4.00	-	-
	(4.00)	(-)	(-)	(4.00)	(4.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 국회(산업위) 지적

- 성과지표의 실적 저하 관련
 - 변화관리 마일리지를 획득한 직원 수가 '13년에는 800명, '14년 742명, '15년 726명으로 점차 감소
- 국외업무여비(220-02)는 예산 성격 상 국외교육여비 (220-03)가 적절
-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설정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계산법 오류로 인한 현상으로 계산식 정정
- 국외교육여비(220-03)로 정정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사업 성과지표 추가 검토 중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수행방향 설정	당해연도 수행방향 설정	산업부
▼		
계획 수립	당해연도 계획 수립	산업부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 수행	산업부
▼		
실적 관리	수행 결과를 변화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	산업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 (개요) 비용기준으로 규제신설시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Cost-in, Cost-out) (비용원칙, 등급 예외 방식)

* 시행에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안전 등의 규제는 적용 예외

○ (비용개념)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직접비용'*을 총량 관리기준으로 운영 (간접비용 제외)

* (직접비용) 직업훈련비, 장비구입, 전문가 자문비 등 피규제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비용 vs (간접비용) 생산성 하락, 소비자 선택폭 감소 등 직접적 화폐지출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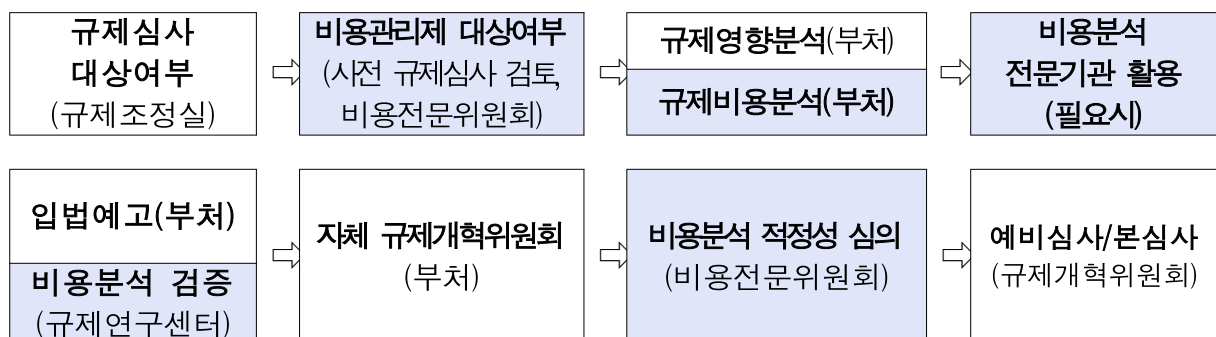
- (규제비용적립제) 추가 절감한 규제비용은 이를 적립, 향후 규제 신설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 (운영체계) 입법예고 전 관리제 적용 대상여부를 국조실과 사전 협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전문위원회, 본회의)에서 비용 적정성 심사

- (전문위원회 및 규제비용분석기구) 규개위 산하에 전문위원회(위원장 규제조정실장)를 설치·운영하고, 규제비용분석 독립기구를 통해 비용분석 검증

○ (실시) 주요 규제부처 및 자발적 참여부처는 '14.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6.7월부터는 전부처 전면 실시

* 총 7개 부처: 우리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 신설·강화규제 비용분석시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을 동시에 실시

참고 2 규제 비용분석 및 규제개혁방안 연구용역 추진방향

□ 배경 및 필요성

- '14.7.1일부터 우리부 등 7개 부처*가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 실시 이후 '16.7월부터 전 부처로 확대

*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문체부, 농림부, 중기청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 그 비용만큼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비용 분석은 경제학적, 회계학적 지식이 요구되어 대부분 부처에서 외부용역 수행

- 신설·강화 규제가 관리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적용대상 신설규제 및 완화규제에 대해서는 엄밀한 비용·편익 분석 필요

* 총량제 적용 예외: 국제조약·협약, 위기 대응, 생명·안전·질서유지, 요금·수수료·과태료 관련 규제

□ 연구용역 방안

- ① 산업부 규제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 비용·편익 분석*

* '17년도 규제 신설, 강화 비용분석 뿐만아니라 규제 비용적립(Banking)에 대비하여 주요한 규제의 폐지, 완화에 대해서도 비용분석 수행

- ② 비용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산업, 에너지분야 규제개혁 연구

* 제조업 분야(업종별)의 핵심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 소요예산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 비용, 편익분석 : 5,000만원

* 규제비용분석 대상 법령 20건 x 건당 250만원 = 5,000만원

- 산업,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방안 연구 : 6,800만원

* 업종별 2건 x 건당 3,400만원 = 6,800만원

참고 3 규제개혁신문고 및 소명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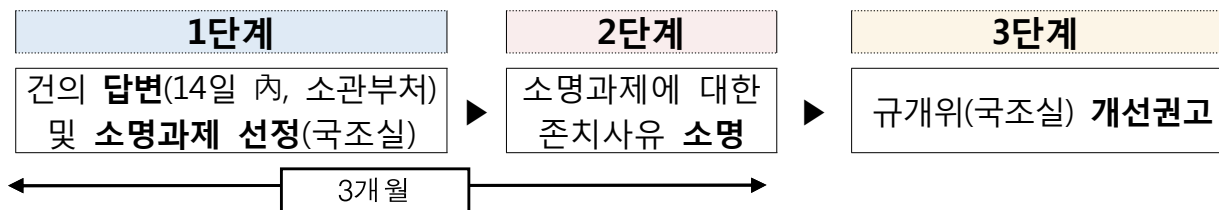
◆ 규제개혁신문고* 신설 후 VIP께서 해당 사이트를 매일 방문, 부처 답변 내용을 수시 확인 중

*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참고) 규제건의 처리상황은 VIP 및 총리 일일보고 中이며, BH 민정수석실에서도 모니터링 中

◆ 각 부처 규제신문고 답변 중 국조실이 소명 대상을 선정하면 자체 규제분석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급 명의로 소명

< 규제신문고 건의처리 흐름도 >



○ (1단계)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신문고 답변*(중장기검토, 불수용) 중 부처의 전향적 검토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과제에 대해서 소명 의무 부여

* 산업부 현황(5.12일 기준 답변완료 139건): (수용) 29건, (중장기) 52, (불수용) 58

- 5.12일 1차 소명 대상 과제를 선정해서 각 부처로 통보(우리부 20건/소부처 120건)

○ (2단계) 각 실·국에서는 자체 규제 분석*을 수행,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고 최종소명** (1급 명의)

* B/C 분석, 규제목적 달성도 및 외국사례 등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규제존치, 규제개선, 대안제시 중 택1

※ (소명기한) 과제 최초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원칙

* 3.21일에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과제는 6.21일까지 소명 필요

○ (3단계) 소명 결과 규제존치 건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필요시 개선권고 실시(기관장은 권고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528	531	531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42 - 317

* 담당자 : 정책기획관(윤갑석), 정보보호담당관(장근무, 044-203-5590), 사무관(한대건, 044-203-55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호담당관실

2. 사업목적

- 최근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지능화·정교화됨에 따라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관제 솔루션을 발굴하여 구축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 최근 악성코드 공격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악성코드 유입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의 네트워크 환경 확대 구축
- 대용량화되는 보안관제용 로그를 지연없이 신속하게 수집·저장·처리가 가능한 대용량 분석기반의 보안관제 체계 확대 구축
- 사이버안전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해 관제망과 공개서버망 연결 점점 구간에 망분리 솔루션 구축

(단위 : 백만원)

제 품 명	수량	금 액
☐ 악성코드 분석 모의 네트워크 구축	1	101
☐ 대용량 이벤트 분석시스템	1	240
☐ 대용량 이벤트 수집·검색서버	2	40
☐ 관제망 보안강화를 위한 망분리솔루션 구축	1	150
합 계		531

☐ 지원 필요성

- 한수원 사이버위기를 계기로 에너지·산업·무역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체제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09년 7.7DDoS, '10년 스틱스넷, '11년 3.4DDoS 및 금융 해킹사고, '12년 샤문, '13년 3.20 및 6.25 사이버테러, '14년 개인정보유출에 이어 원전 해킹사고 대란 등 사이버위협 현실화
- 이에, 진화하는 해킹기법에 신속·정확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구축이 필수적임
- 또한, 北 핵실험 등 친북세력으로부터 사이버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등 특단의 개선조치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B-A)	%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528	531	531	-	-
▪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528	531	531	-	-
☐ 비목(합계)					
○ 기타유형자산(430-01)	528	531	531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무역·산업 등 실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 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사이버전쟁(사이버 미사일)로 평가되기도 하는 사이버공격을 사전 탐지·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최근 지능화·전문화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스템 고도화 구축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5.3	▪ 2016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17	5.3	▪ 2017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18	5.3	▪ 2018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19	5.3	▪ 2019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20	5.3	▪ 2020년도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3조(훈령 제59호)

○ 추진경위

- '06. 05월 :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 : 국가정보원장) 의결
- *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 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 07월 : 산업자원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 12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 08월 :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6개 기관)
- '10. 01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0. 01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 01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2. 02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2. 06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3. 06월 : 정부 조직개편으로 미래부 이관(ETRI, 생기研, NIPA)
- '16. 08월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02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2	5.5	5.3	5.3	5.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불용 : '13년(5백만원), '14년(4백만원), '15년(3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7.2 ()	()	()	7.2 ()	7.15 ()	()	0.05 ()
'14년	5.49 ()	()	()	5.49 ()	5.45 ()	()	0.04 ()
'15년	5.31 ()	()	()	5.31 ()	5.28 ()	()	0.0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76.0)
 - 평가시기 : 2013년 5월('10년 ~ '12년 사업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사례
 - 미국 : 1)NERC에서 2)ES-ISAC 구축·운영

1)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uncil): 1965년 정전상태이후 설립되어 전기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수행(美 전력ISAC 운영기관)

2) ES-ISAC(Energy-Sector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 "에너지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 에너지 분야 사이버안전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하여 최상의 보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분야별 센터

- 미연방정보국 및 CIA의 사이버 위협정보 제공과 회원사 정보 시스템 보호

※ NERC는 1965년 정전사태 이후 설립되어 북미의 전기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Co-ordinator 역할 수행

- 미국은 현재 10개 분야에 정보공유분석센터 운영중

※ Banking&finance, Chemicals, Emergency, Food, Government, Info&Comms, Transport, Water, Energy, Other(Real Estate)

○ 국내사례

- 국가(NCSC) 및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 운영

-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수립(기획 · 조정)

-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는 해당 소관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위협 정보수집 · 분석 · 전파

※ 행정, 국방, 외교, 국토, 보건, 산업, 교육, 통신, 금융, 재정, 노동, 법무 등

(5) 사업추진절차

-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계획 승인 → 발주의뢰 → 입찰공고 → 기술 · 가격평가 → 구축사업자 선정 →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 시스템 검수 → 사업비 집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제1항(정보공유 · 분석센터)

금융 · 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 · 분석센터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정보 · 분석체계 운영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제1항(보안관제센터의 설치 ·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 · 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 ·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사이버안전 대상기관 : 총 47개 기관

분야	기 관 명			기관수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전기공사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전, 한전KDN, 한진원자력연료, 원자력문화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기술, 광해관리공단	26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4
산업·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다이텍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부품연구원, 강원랜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17
합 계				47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사업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2,706	1,580	1,571	△9	△0.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3 - 301

* 담당자 : 운영지원과장(이호현), 재무팀장(여영섭), 주무관(이영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해당없음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는 기본 경비와는 달리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정책지원을 위해 편성
 - * 사무관면접평가비용, 외국어 수강비용, 해외파견관임차료 등은 외국과의 통상협상, 해외주재관 근무 등의 우리부 특성을 감안하여 편성
- 모두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개념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
- 또한, 모든 부처가 본부 기본경비외에 부처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본부정책지원사업을 별도로 편성·운영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백만원)

구분	요구 내용	산출 근거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571	
·기타직보수(110-02)	21	- 기타계약직(사무보조) 1명 : 1,750천원*12월 = 21,000천원
·일반수용비(210-01)	434	- 인쇄비 264,000천원 - 물품구입비 77,000천원 등
·임차료(210-07)	304	- 해외파견관 임차료 239,825천원 - 장차관차량 임차료 64,175천원
·유류비(210-08)	44	- 업무용 차량 유류비 : 44,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210-09)	23	- 유지 보수비 : 23,000천원
·국내여비(220-01)	105	- 국내 출장비
·국외업무여비(220-02)	47	- 해외 출장비
·사업추진비(240-01)	9	- 정책업무협약 : 300,000원 * 30회
·연구개발비(260-01)	510	- 연구용역 수행
·포상금등(310-03)	24	- 직원 아이디어 공모, 이달의 우수부서 등 부내 포상
·고용부담금(320-09)	2	- (국민연금고용보험) 기타계약직 1명 * 120,000 * 12 = 1,440,000원 - (퇴직금) 기타계약직 1명 * 560,000원
·국제부담금(340-02)	45	- 해외파견관 국제기구 부담금(UNCTAD)
·시설비(420-03)	1	- 세종청사 칸막이 공사 등

□ 지원 필요성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

- 정부 3.0 시책과 창조경제의 실현,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연구용역도 필요
- 실국 활동에 필요한 출장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2,706	1,580	1,571		
□ 비목(합계)	2,706	1,580	1,571		
○ 기타직 보수(110-02)		20	21	1	5
○ 일반수용비(210-01)		527	434	△92	△17
○ 임차료(210-07)		304	304		
○ 유류비(210-08)			4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9	23	14	155
○ 차량선박비(210-10)		58			
○ 복리후생비(210-12)			0.4		
○ 기타운영비(210-16)		5			
○ 국내여비(220-01)		100	105	5	5
○ 국외업무여비(220-02)		50	47	△3	△6
○ 사업추진비(240-01)		9	9		
○ 연구개발비(260-01)		470	510	40	8.5
○ 포상금등(310-03)		24	24		
○ 연금지급금(320-03)		2			
○ 고용부담금(320-09)			2		
○ 국제부담금(340-02)		1	45	44	4400
○ 시설비(420-03)		1	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통상자원정책이 원활하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의 사업추진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903백만원 ▪ 여비 150백만원 등
'17	-1,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805백만원 ▪ 여비 152백만원 등
'18	-1,381	
'19	-1,312	
'20	-1,3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
 - 대외무역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등
 - 에너지법 제1조, 제4조, 제12조, 제16조 등

○ 추진경위

- 13회계연도 예산규모는 '12회계연도 19대비 1억원 삭감
- 14회계연도 예산규모는 13년대비 약 2.3억원 삭감
(2회계연도 동안 총 3.3억원 삭감되어 산업통상자원정책 수립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음)
- 15, 16회계연도 예산규모는 14회계연도 대비 비슷한 수준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18.2	15.9	15.8	15.8	15.7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본예산+추경)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연구개발비 예산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 (불용) 정부 경상경비 절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8.2 ()	0.7 ()	-1.9 ()	16.9 ()	15.1 ()	1.4 ()	0.5 ()
'14년	15.9 ()	1.4 ()	0.5 ()	17.8 ()	16.5 ()	0.7 ()	0.6 ()
'15년	15.8 ()	0.7 ()	11.7 (11.2*)	28.2 ()	27.0 ()	0.9 ()	0.3 ()

* 11.2억원 : 경제활성화법 홍보예산 예비비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추진방향 설정	전반적인 연간 추진방향 설정	각 실국
▼		
추진계획 수립	당해연도 연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각 실국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사업 수행	각 실국
▼		
소요 예산 요청	각 건별로 예산지출 요청	각 실국
▼		
예산 지출	각 개별 건별로 예산 지출	재무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817	1,125	1,736	611	54.3
○국제기구분담금	535	536	564	28	5.2
○통상협력정책지원	179	217	212	△5	△2.3
○다자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경제협력강화	974	803	1,500	697	86.8
소계	2,505	2,681	4,012	1,331	49.6
총계	2,505	2,681	4,012	1,331	49.6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817	1,125	1,736	611	54.3

* 사업코드 : 110 - 113 - 1900 - 1932 - 301

* 담당자 : 통상정책국장(박건수), 통상정책총괄과장(이경식, 044-203-5620), 주무관(김시덕, 044-203-56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국내외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전략 수립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 242백만원

-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소통강화 및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통상추진위원회, 통상산업포럼, 비관세장벽협의회 등 운영 (5백만원)

* 회의체 개최 비용 : 5백만원(0.5백만원*10회)

- ◇ 통상추진위원회: 종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대통령 훈령)의 FTA 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부처간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해 23개 부처로 구성(위원장: 산업부장관)
- ◇ 통상산업포럼: 통상정책 및 교섭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과 업종별 영향분석 등 민관 협업을 위한 협의체
- ◇ 비관세장벽협의회: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 평가 및 검토를 통해 비관세장벽의 종합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특별조직으로 통상산업포럼內 각 분과별 분과장(업종별 협회 임원급)들로 구성(위원장: 차관보)

- 주요국과의 FTA체결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통상산업 정책의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정례적인 국제컨퍼런스 개최 (120백만원)
- 미주·구주 등 주요국과의 통상 관련 회의체 참석 및 통상현안 대응 (90백만원)

* 통상 관련 회의체 참석 : 77백만원(국외여비: 7회*평균 2.5백만*4인=70백만원) + (국내여비 7백만원)

** 통상현안 관련 법률 자문 : 13백만원

- FTA 등 통상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및 인쇄물 제작 (27백만원)

②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계통상 구축 : 780백만원

- 한-미 통상현안 관련 미 의회 상하원 등 의회자문, 분쟁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통상네트워크 구축 비용 요구(\$590,461)

*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 자문비: 200백만원 (\$151,400)

* 이행 관련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비: 100백만원 (\$75,700)

* 한미 FTA 활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 구축: 480백만원 (\$363,361)

③ 통상절차법의 이행 : 324백만원

- 통상절차법 제9조, 11조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9조) 및 영향평가(11조) (300백만원)

* 한중미 FTA 영향평가, 한-이스라엘 FTA 영향평가 등(6건*50백만원) : 300백만원

- 통상절차법 이행에 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2백만원)

* 위원 자문료(25만*30명*1회)+회의개최비(4.5백만원) : 12백만원

- 통상절차법 해석, 개정, 이행에 관한 법률 자문 (12백만원)

④ 통상전략 수립 : 240백만원

- 양자간 통상현안 대응전략 및 다자통상협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40백만원)

* 연구용역 8건×30백만원

⑤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 150백만원

- 주요 통상 상대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민감하고 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의 통상 제도 및 환경 조사 연구(30백만원)
-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검토·평가, 대응전략 연구(120백만원)

구 분	'16예산	'17요구
□ 통상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125백만원	1,73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273백만원 - 통추위, 통상산업포럼 등 협의체 운영 - 통상정책 대국민 홍보	242백만원 - 통추위, 통상산업포럼 등 협의체 운영 - 통상정책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 간 신경제통상 구축 	-	780백만원* - 한-미 통상현안 관련 미 의회자문, 법률자문, 통상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절차법의 이행 	372백만원 - 통상절차법 이행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 평가 연구	324백만원 - 통상절차법 이행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전략수립 	330백만원 - 중장기 통상전략수립 및 통상전략 수립 연구	240백만원 - 중장기 통상전략수립 및 통상전략 수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 	150백만원 - 주요국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 및 대응전략 마련	150백만원 - 주요국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 및 대응전략 마련

* '16년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1937-401) 내역사업 -> '17년 통상기반 조성및역량강화(1932-301) 내역사업으로 이관(업무소관부서 변경)

□ 지원 필요성

- (협약체 운영 및 홍보) 통상현안에 대한 민·관·학 정보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통상정책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
 - － 국내외 통상관계자를 초청하여 FTA체결 성과 점검 및 중장기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 정례화 필요
 - －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소통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여 통상정책의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
 - －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와의 협의 강화를 통해 피해 보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국내 대책 내실화
-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계통상 구축) 한미 통상현안 관련 미국 현지에서의 의회자문, 법률자문 등을 통해 통상 현안 대응 효과성 제고 필요
- (통상절차법의 이행) 주요국과의 FTA 체결건수 증가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의무 검토사항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추가적 재원 투입을 통해 기체결된 FTA 및 협상중인 FTA의 성실한 교섭·이행을 지속적 관리·감독
 - － 제9조(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 11조(영향평가)에 근거하여 ‘RCEP 영향평가, 한-이스라엘 FTA 영향평가’ 등 실시 예정
- (통상전략 수립) FTA 협상 대상국을 포함하여 다자 및 양자간 통상협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비관세장벽 등 원활한 통상정책 시행의 걸림돌에 대응하는 통상산업 전략을 마련
 - － 지속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마련, WTO 협상 등 다자간 협상 및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국익 극대화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수립) 주요 통상 상대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사례 발굴 및 검토를 통하여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 및 현지 대응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817	1,125	1,736	611	54.3
▪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166	273	242	△31	△11.4
▪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	-	780	순증	100
▪ 통상절차법의 이행	322	372	324	△48	△12.9
▪ 통상전략 수립	176	330	240	△90	△27.3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수립	153	150	150	-	-
☐ 비목(합계)	817	1,125	1,736	611	54.3
○ 일반수용비(210-01)	114	235	829	594	252.8
○ 일반용역비(210-14)	-	-	140	순증	100
○ 국내여비(220-01)	5	7	7	-	-
○ 국외업무여비(220-02)	89	73	70	△3	△4.1
○ 일반연구비(260-01)	-	-	690	순증	100
○ 연구개발비(260-02)	609	810	-	△609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통상정책의 추진기반 강화하고, 통상환경 연구를 통해 국익 증대
 -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정책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활성화

-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FTA성과를 점검하고 국제적인 협상동향을 파악하여 FTA 허브국가로 위상 제고
- 통상절차법상 제반의무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통상조약 체결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
- 최근 심화되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비관세장벽협의회 운영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대응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1.3	○ 통상협약체 운영 및 홍보 2.7, 통상절차법 이행 3.7, 통상전략수립 3.3, 해외비관세장벽대응 전략수립 1.5
'17	10.5	○ 통상협약체 운영 및 홍보 1.8, 통상절차법 이행 3.5, 통상전략수립 3.2, 해외비관세장벽대응 전략수립 2.0
'18	7.9	○ 통상협약체 운영 및 홍보 1.4, 통상절차법 이행 3.2, 통상전략수립 1.6, 해외비관세장벽대응 전략수립 1.7
'19	7.9	○ 통상협약체 운영 및 홍보 1.4, 통상절차법 이행 3.2, 통상전략수립 1.6, 해외비관세장벽대응 전략수립 1.7
'20	7.5	○ 통상협약체 운영 및 홍보 1.4, 통상절차법 이행 2.8, 통상전략수립 1.6, 해외비관세장벽대응 전략수립 1.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협약에 관한 절차규정*(대통령훈령)」

○ 추진경위

- '13년까지 FTA 산업대응체제 구축 및 다자간 협상전략수립 이행에 중점
-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수립, 관계부처 및 기관 협업, 대국민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 '14년부터는 구 지경부 '통상협상전략수립'과 외교부 이관 '통상외교연구' 및 '다자통상외교추진 및 정책홍보' 사업 간 구조조정을 통해 '통상정책 수립 및 정책홍보'와 '다자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강화' 사업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9.4	9.4	9.7	11.4	17.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 경쟁입찰로 인한 연구용역 계약 차액 및 정산잔액,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불용액 발생
- (이월)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를 위해 부득이한 이월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9.4 ()	0.3 (-)	- (-)	9.7 ()	7.5 ()	0.4 (-)	1.9 (-)
'14년	8.4 ()	0.4 (-)	- (-)	8.7 ()	8.3 ()	0.4 (-)	0.02 (-)
'15년	9.7 ()	0.4 (-)	- (-)	10.1 ()	8.2 ()	1.8 (-)	0.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68.75)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직접 집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국제기구분담금 (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국제기구분담금	535	536	564	28	5.2

* 사업코드 : 110 - 113 - 1900 - 1932 - 302

* 담당자 : 통상정책국장(박건수), 통상정책총괄과장(이경식, 044-203-5620), 주무관(김시덕, 044-203-56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54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기구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이익을 대변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 379백만원

- 산출내역 : '17년 예상 분담금 293,724유로 × 기준환율 1,290원/유로
- 293,724유로 = 285,124유로(17년 분담금 총액 11,980,000유로 × 한국 분담 비율 2.38%) + 8,600유로(이란, 북한 등 면제국 할당)

②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 73백만원

- 산출내역 : '17년 예상 분담금 56,000유로 × 기준환율 1,290원/유로
- 56,000유로 = 회원국 할당 기준금액 14,000유로 × 조정계수4 (한국은 WB기준 인구수 48백만으로서 Class3에 속함)

③ OECD조선작업반 분담금 : 112백만원

- 산출내역 : '17년 예상 분담금 86,326유로 × 기준환율 1,290원/유로
- 86,326유로 = OECD 조선작업반(party 6) 프로그램 총액예상 345,302유로 × 한국 분담비율 25%

□ 지원 필요성

- 국제기구 분담금 적기 납부를 통해 국제기구 활용에 참여하여 국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에 유리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국제기구분담금	535	536	564		
▪ 국제도량형국 (산출근거)	356	358 (예상분담금 292,342유로×1,225원/유로)	379 (예상분담금 293,724유로×1,290원/유로)		
▪ 국제법정계량기구 (산출근거)	71	69 (예상분담금 56,000유로×1,225원/유로)	73 (예상분담금 56,000유로×1,290원/유로)		
▪ OECD조선작업반 (산출근거)	108	109 (예상분담금 89,113유로×1,225원/유로)	112 (예상분담금 86,326유로×1,290원/유로)		
□ 비목(합계)					
○ 국제분담금(340-02)	535	536	56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환율 및 각 국제기구의 분담금 규모를 파악하여 조약에 따른 의무 분담금 성실 납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5.36	○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292,342유로 = 3.58억원 ○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56,000유로 = 0.69억원 ○ OECD조선작업반 분담금 89,113유로 = 1.09억원 ※ 기준환율 = 1,225원/유로
'17	6.64	○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316,480유로 = 4.55억원 ○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56,000유로 = 0.81억원 ○ OECD조선작업반 분담금 89,113유로 = 1.29억원 ※ 기준환율 = 1,435원/유로
'18	6.34	○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316,480유로 = 4.34억원 ○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56,000유로 = 0.77억원 ○ OECD조선작업반 분담금 89,113유로 = 1.23억원 ※ 기준환율 = 1,370원/유로
'19	6.34	○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316,480유로 = 4.34억원 ○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56,000유로 = 0.77억원 ○ OECD조선작업반 분담금 89,113유로 = 1.23억원 ※ 기준환율 = 1,370원/유로
'20	6.34	○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316,480유로 = 4.34억원 ○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56,000유로 = 0.77억원 ○ OECD조선작업반 분담금 89,113유로 = 1.23억원 ※ 기준환율 = 1,370원/유로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미터협약 및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조약 제51호)

- 국제법정계량기구 설치협약(조약 제635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조약 제1358호)

○ 추진경위

- '06년 6개 국제기구 분담금이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0년 국제설탕기구 분담금이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1년 섬유수출개도국기구가 비공식조직으로 전환되어 납부 제외
- '12년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 ODA예산 분리지침에 따라 분리
- '13년 국제납아연연구그룹 분담금이 의무/재량 분담금 분리지침에 따라 분리
- '13년 국제설탕기구 분담금이 농림부로 이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국제기구분담금	7.23	7.37	7.21	5.36	5.6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집행 시 환율하락으로 국제기구분담금 완납 후 8백만원 불용
- 2014년 : 예산편성대비 유로환율 하락 및 국제도량형국 부담금 조정으로 195백만원 불용
- 2015년 : 예산편성대비 유로환율 하락 및 국제도량형국 부담금 조정으로 186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7.23	-	-	7.23	7.15	-	0.08
'14년	7.37	-	-	7.37	5.42	-	1.95
'15년	7.21	-	-	7.21	5.35	-	1.8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직접 수행

- 각 국제기구로부터 분담금 납부 요청 공문 접수 → 해당 분담금 직접 납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통상협력정책지원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통상협력정책지원	179	217	212	△5	△2.3

* 사업코드 : 110 - 116 - 7100 - 7133 - 302

* 담당자 : 통상정책국장(박건수), 통상정책총괄과장(이경식, 044-203-5620), 주무관(김시덕, 044-203-56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계속
총사업비	해 당 없음
사업규모	해 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국제행사 연설문 작성 및 통역, 외빈면담, 국가간 정례협의체 지원, 외국 공식서한 작성 등 대외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 운영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4명*의 에디터에 대한 급여 운영 : 212백만원

* 영어 3명(한국인 2명, 원어민 1명), 중국어 1명

☐ 지원 필요성

- 국제행사 연설문 작성 및 통역, 외빈면담, 국가간 정례협의체 지원, 외국 공식서한 작성 등 대외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 운영 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통상협력정책지원	179	217	212		
▪ 통상협력정책지원	166	217 (에디터 급여 =217백만원)	212 (에디터 급여 =212백만원)		
☐ 비목(합계)	179	217	212		
○ 연구개발비(260-00)	179	-	-		
○ 기타직보수(110-02)	-	205	-		
○ 상용임금(110-03)	-	-	200		
○ 복리후생비(210-12)	-	1	1		
○ 연금지급금(320-03)	-	11	1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외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를 안정적으로 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17	○에디터 급여 2.17
'17	2.26	○에디터 급여 2.26
'18	2.41	○에디터 급여 2.41
'19	2.58	○에디터 급여 2.58
'20	2.74	○에디터 급여 2.7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해당없음
- 추진경위 : 산업통상자원부 통번역 에디터 운용
 - * 16년부터 기타직보수로 비목 전환
 - * 기존 「무역투자정책수립운영」에서 '17년부터 통상협력정책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통상협력정책지원	2.08	2.08	1.97	2.17	2.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재직기간별 급여차로 인해 불용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08	-	-0.28	1.80	1.80	-	-
'14년	2.08	-	-	2.08	1.90	-	0.18
'15년	1.97	-	-	1.97	1.79	-	0.1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에디터 급여운영 예산으로 직접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사업(계속, 재량)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다자통상협상추진및글로벌경제협력강화	974	803	1,500	△697	168%

* 사업 코드 : 110-113-1900-1932-401

* 담 당 자 : 통상정책국장(박건수), 세계무역기구과장(박성진, 044-203-5630), 주무관(최민지, 044-203-563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계속 외교부 "다자통상외교 추진 및 정책홍보"(01년~) 중 일부가 '13년부터 이체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2. 사업목적

- WTO 정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범세계적 시장개방 확대와 보편적 무역규범 강화를 추진, 우리의 통상 이익 제고
 - WTO 상의 새로운 접근방안 구체화 및 복수국간 협상 공조 강화
 - 다자무역체제로의 수렴을 위한 RTAs 모니터링·분석 추진*
- * (사업배경) 최근 주요국들이 지역무역협정(RTA)에 주력하여 WTO 협상 진전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RTAs 분석을 통한 다자무역체제로의 수렴방안 모색
- G20, APEC, OECD, 다보스포럼 등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해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질서에 능동적·적극적인 대응
 - 아·태지역내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WTO 체제 강화와 다자간 협상 진전 추진(451백만원)

- 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64백만원)

*** 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50**

- 분야별 협상 참가, 각료회의 운영 직접 경비 7개 분야(농업,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ITA, 규범, SPS/TBT) 및 협상대책반 운영, 자문 등 45 (1.5백만원*30회)
- WTO 협상 관련 임차료 5 (1백만원*5회)

***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작성 및 분석 14**

-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 4 (4백만원*1회)
- 양허안 작성 및 분석, 합의안에 대한 법률 자문 10 (5백만원*2회)

- 분야별 협상대책반, 관계부처 간 업무협약(35백만원)

- * 회의 대응협의, 분야별 협상대책반, 주한외교단, 관계부처간 업무협약 35 (50,000*10인*7개분야*10회)

-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상 준비 지원요원 채용(9백만원)

- 제 11차 WTO 각료회의 및 정례회의 참석 등 다자통상체제 논의 참여(343백만원)

- * 정례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 주요각료회의 계기 통상장관회담 참석 71 (35.5 백만원*2회) / 분야별(농업,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ITA, 규범, SPS/TBT) 협상 참석 272 (8백만원*34회)

② APEC, OECD, G20, 다보스 포럼 등 지역경제협력 강화(179백만원)

- APEC 및 OECD 고위급 회의, 실무급 위원회 등 참석 및 G20, 다보스 포럼 참석 (169백만원)

- *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연 3회) 및 고위관리회의(SOM, 연 4회) 참석 40

- * 통상장관회의(MRT, 연 2회) 및 정상회의(연1회) 참석 40

- * OECD 무역위원회(연 2회), 각료이사회(무역세션, 연 1회) 참석 39

- * G20, 다보스 포럼 참석(2회) 50

- 전문가 회의, 회의준비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대책 회의 및 업무협의 등 (10백만원)
- ③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분석체계 구축(70백만원)
 - RTAs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추진, 세미나 개최(70백만원)
 - * (예시) 6개 서비스 분야(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운송, 금융) 양허 DB화 작업 및 주요국 RTA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 측 관세품목 DB화 작업 등
- ④ '17년 ASEM 경제장관회의(EMM) 개최(800백만원)
 - '17년 9월 서울에서 2일간(본회의 1일+양자 및 부대행사 1일) 개최 하며, 정부대표단 약 200여명(회원국 51개+EU·ASEAN) 참석 예정
 - 행사장·장비 임차, 행사기획, 인쇄·제작물 등 운영비 672백만원
 - ASEM 관련 준비회의 참석 및 초청경비(항공, 숙박, 수송) 88백만원
 - 회의 준비 및 공식 오만찬 등 사업추진비 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WTO 각료회의* 및 정례기구 회의, DDA 협상 등은 WTO 다자 통상 분야의 기본적·필수적 활동인 바, 적극 참여를 통해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전 및 보호주의 대응 등을 통한 우리의 통상국익 확보 필요
 - * 2017년 제 11차 WTO 각료회의 예정
- G20, APEC, OECD, 다보스포럼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
 - APEC 및 OECD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사회의 통상관련 주요이슈를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
- 10여년간 중단된 '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 확정으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국제사회 기여 증진, 아시아-유럽 경제협력에서 주도적 위치 확보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B)	증 감 (B-A)	
				(B-A)	%
□ 사업명	974.2	803	1,500	△697	186%
■WTO제제강화와 다자 간 협상 진전 추진 사 업	495.4	496 ■다자간 및 복수국 간 협상 준비 지원요원 채용 12 (1.2백만원)8개 월+수당=12 ■(여비)WTO 정례회의 참석 등 다 자통상체제 논의 참여 343 ■(운영비)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 111 ■(사업추진비)분야별 협상대책반 주현의교단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30	451 ■다자간 및 복수국 간 협상 준비 지원요원 채용 9 (1.2백만원)6개 월+수당=9 ■(여비)WTO 정례회의 참석 등 다 자통상체제 논의 참여 343 ■(운영비)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회의 결과 책 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 64 ■(사업추진비)분야별 협상대책반 주현의교단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35	▽44	90%
■APEC, OECD, G20 등 지역경제협력 강화	201.5	202 ■(여비)APEC/OECD 고위급 및 실 무급 회의 130 ■(여비)G20, 다보스포럼 등 참석62 ■(사업추진비)전문가회의 개최 10	179 ■(여비)APEC/OECD 고위급 및 실 무급 회의 및 G20, 다보스포럼 등 참석 169 ■(사업추진비)전문가회의 개최 10	▽23	80%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분석 체계 구 축	98	105 ■(운영비)RTAs 모니터링 정보분석 센터 운영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100 ■사업추진비: 5	70 ■(운영비)RTAs 모니터링 정보분 석센터 운영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70	▽35	66%
■중소기업의 GVCs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	184.2	-	-	-	-
■'17년 ASEM 경제장관 회의(EMM) 개최	(신규)	(신규)	800 ■(운영비) 행사장임차, 통영 행사 기획, 제작물 등 672 ■(국외여비)초청경비 88 ■(사업추진비)40	신규	신규
□ 비목(합계)					
○ 일용임금(110-03)	12	12	9	▽3	75%
○ 일반수용비(210-01)	92.9	215.5	722	△506.5	335%
○ 특근매식비(210-05)	7.5	9	9	0	100%
○ 임차료(210-07)	9.5	9.5	5	▽4.5	52%
○ 일반용역비(210-14)	90.9	100	70	▽30	70%
○ 국외업무여비(220-02)	534.8	412	600	△188	145%
○ 사업추진비(240-01)	42.2	45	85	△40	188%
○ 정책연구비(260-20)	184.2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으로서 WTO 분야별 협상 진전, APEC, OECD, G20 등 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와 보편적인 통상규범 강화를 추진하여 우리의 통상이익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8.47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5.20 APEC 등 지역경제협력 : 2.12 RTA모니터링/분석 : 1.15
'17	9.15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5.60 APEC 등 지역경제협력 : 2.30 RTA모니터링/분석 : 1.25
'18	7.78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4.77 APEC 등 지역경제협력 : 1.94 RTA모니터링/분석 : 1.07
'19	7.46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4.58 APEC 등 지역경제협력 : 1.86 RTA모니터링/분석 : 1.02
'20	7.31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4.70 APEC 등 지역경제협력 : 2.08 RTA모니터링/분석 : 1.0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 제37조에 따라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조정
-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 :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추진경위

- WTO DDA : '01.11월 제 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도하 개발아젠다(DDA) 협상출범, 2002년부터 각 분야별 협상 개시
- 2008년 잠정타협안 타결 실패 이후, Early Harvest, 복수국 간 협상(환경상품협정(EGA), 정보통신협정(ITA), 서비스협정(TISA)) 등 다른 접근방법 모색
- '15.12월 나이로비 제 10차 각료회의에서 정보통신협정(ITA) 확대협상 타결, 농업·면화·LDC 등 3개 부문 6개 각료결정문 채택
- '16년 다보스(1월)·APEC(5,11월)·OECD(6월)·G20(7,9월) 등 다양한 고위급 정상회의와 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포스트-나이로비 협상 방향 모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다자통상협상 추진및글로벌경 제협력강화	696	846	963	803	15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전용 : DDA대응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비목 조정(200백만원, 운영비→여비), 통상관련 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30백만원) 및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비밀문서 시스템 구축 위한 운영비 등 (38백만원) 전용
- 이월 : 연구개발비 이월(16.4백만원)로, FTA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 주제 선택 및 설계 지연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

- 불용 :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의 계약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및 조직개편 이후 '13년도 하반기 사무보조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지연(18백만원) 등

○ 2014년

- 이월 : 연구용역 내용보완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주요 RTA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 및 다자적 대응방안 연구, (당초)'14.8월~12월 → (변경) '14.8월~'15.4월)
- 불용 : 연구용역 계약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이 및 사무보조원 근무기간 만료로 인한 인건비 일부 불용액 발생

○ 2015년

- 불용 : 집행잔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6.96 ()	- ()	-0.68 ()	6.28 ()	5.53 ()	0.16 ()	0.59 ()
'14년	8.46 ()	0.16 ()	- ()	8.62 ()	8.16 ()	0.25 ()	0.22 ()
'15년	9.63 ()	24.5 ()	- ()	9.87 ()	9.74 ()	- ()	0.1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통상협력국

통상협력국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양자산업협력	7,116	7,200	7,100	△100	△1.4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8,070	8,790	11,894	3,104	35.3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69	85	79	△6	△7.1
소계	15,255	16,075	19,073	2,998	18.7
총계	15,255	16,075	19,073	2,998	18.7

양자산업협력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양자산업협력	7,116	7,200	7,100	△100	△1.4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1900 - 1931 - 301

* 담당자 : 통상협력정책국장(강명수), 통상협력총괄과장(김기준, 044-203-5650), 사무관(김현진, 56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일산업협력재단, KOTRA, 대한상의 등 국제협력기관

2. 사업목적

- 고위급, 장·차관 등의 해외방문과 상대국 고위급 등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국가별 산업통상자원 협력 증진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6,180백만원)

- (중앙아·CIS) 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 운영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250백만원)

* 중앙아 지역과의 민관협력채널 유지, 한-카자흐, 한-우즈베크, 한-투르크 등 중앙아 주요지역과의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강화

- (동북아) 중국 등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지원* 및 지역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580백만원)

- * 중국 중서부지역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중국 통상사절단 파견 등 동북아 협력사업
- ** 한-광둥성 발전포럼, 한-사천성 경제협력포럼 개최 등 협력사업

- (한일산업협력) 일본 경제, 산업 조사연구 등을 통한 한-일 협력전략 수립 및 한-일 지역간 협력채널 운영과 교류 활성화 등 한일협력사업(2,500백만원)

- (아주) 아세안*, 서남아** 지역 경험 네트워크 구축(1,050백만원)

- * 한-베트남 장관급 공동위 개최, 한-인니 경험공동위·경협실무 TF 개최,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 공동위 개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 회의 등
- ** 인도 진출 경제사절단 캠프 지원, 한-미얀마 산업자원협력위 개최 등

- (중동·아프리카) 중동·아프리카 협력네트워크 구축(1,150백만원)

- *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아프리카 협력채널 구축 및 사절단 파견, 한-중동 민관 경제협력 활성화, 한-이란 무역·투자 컨퍼런스 개최 등

- (미 주) 북미, 중남미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350백만원)

- * 중남미 협력채널 구축 및 경제사절단 파견, 미주지역 산업통상 네트워크 구축, 중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프로젝트 발굴 등

- (구 주) 구주 산업협력협 네트워크 구축(300백만원)

- * 러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중동부 유럽 국가 경제협력 강화, 한-영 조선플랜트 협력 등

② 산업통상협력 기반 구축(570백만원)

- 해외진출 경제활용 포털 운영 및 진출정보 제공(360백만원)

- * 해외진출 관련 정보와 비즈니스 활용 정보 제공 관련 포털 및 모바일 앱 운영, 홍보 등 진출정보 지원(360백만원)

- MDB와의 해외프로젝트 금융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기업의 해외금융역량강화 지원 및 ADB협력(210백만원)

- * MDB 프로젝트플라자 개최, 해외프로젝트 금융조달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ADB joint Energy Forum 등

③ 산업통상협력 전략 및 정책수립(350백만원)

- 권역별 양자협력을 위한 전략 및 지원방안 수립(350백만원)

- * 저유가,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대응한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연구용역)

□ 지원 필요성

-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대 신흥개도국, 미개척 자원부국 선점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필요
 - 정상외교 및 고위급 방문과 연계한 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경제협력 지원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앙아 등 자원부국과의 산업 협력위, 민간 교류행사, 기술교류 등 협력기반 구축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중국 등 지역내 신흥국과의 협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교류사업 추진 지원
-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협력 지원 필요
 - 녹색기술 등 선진기술 공동개발 확대, FTA발효 대비 협력강화
- 통상환경은 단순한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요구 사항과 우리의 필요사항이 연계된 협력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맞춤형 산업자원협력 전략 수립지원 등 산업자원협력 정책기능 지원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백만원)	
				증 감 (B-A)	%
□ 양자산업협력	7,116	7,200	7,100	△100	△1.4
▪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5,861	5,940	6,180	240	4.0
▪ 산업통상협력 기반 구축	850	910	570	△340	△37.4
▪ 산업통상협력 전략 및 정책 수립	405	350	350	0	0
□ 비목(합계)	7,116	7,200	7,100	△100	△1.4
○ 민간경상보조(320-01)	7,116	6,850	6,750	△100	△1.5
○ 정책연구비(260-02)	-	350	350	0	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신흥시장 선점을 위해 개도국과의 통상협력 비중 확대
 -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 사업 지원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정부간 협력채널이 중요한 자원부국과의 정부간, 민관합동 협력채널 등 통상인프라 구축에 주력
 - 기술지원, 전문가 교류 등 개발협력 성격의 다양한 양자협력사업 확대로 우리기업 동반진출 유도
- 선진 경제권과는 대외경제협력체 등을 통한 통상현안 해소, 녹색 기술 공동연구 등 경제협력 고도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협력 강화, 전문인력 교류 지원 등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산업발전정책 체계화, 맞춤형 산업자원협력 전략수립 지원 등 산업자원협력 기반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7,200	▪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 5,940 ▪ 산업통상협력 기반구축 : 910 ▪ 산업통상협력 정책 및 전략수립 : 350
'17	7,100	▪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 6,180 ▪ 산업통상협력 기반구축 : 570 ▪ 산업통상협력 정책 및 전략수립 : 350
'18	6,416	▪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 5,460 ▪ 산업통상협력 기반구축 : 700 ▪ 산업통상협력 정책 및 전략수립 : 250
'19	6,280	▪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 5,480 ▪ 산업통상협력 기반구축 : 570 ▪ 산업통상협력 정책 및 전략수립 : 230
'20	6,564	▪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 5,700 ▪ 산업통상협력 기반구축 : 620 ▪ 산업통상협력 정책 및 전략수립 : 24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및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92.1 : 한일정상회담(서울)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사업 합의
- '93.1 : 한일산업협력 사업 시행
- '93.4 : 한미산업기술협력기금 설치 제안(한미통상장관 회담)
- '96.1 : 산업협력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EU 고위협의회)
- '96.11 : 대통령 동남아 순방 후속사업으로 한아세안산업기술협력 사업 추진
- '98.1 : 한미 · 한EU · 한아세안 산업기술협력사업 시행
- '01.5 : 국무총리 중동순방 후속사업으로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 기획
- '03.1 : 한중동산업협력사업 시행
- '04.1 : 한아세안산업협력사업에서 한중협력사업을 분리
- '06.4 :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한-알제리 경제협력 T/F 발족
- '06.5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 '06.10 : “아세안 중소기업 경영인 초청연수 사업”과 “여성 중소기업인 네트워크사업”이 한 · 아세안 FTA 경제협력 공식 사업으로 채택
- '08.5 : 총리 중앙아방문계기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 등 비즈니스 포럼 개최
- '08.9 : 2008년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개최
- '08.9 : 러시아 정상방문계기 한러 산업협력 강화
- '08.10 :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작업반 회의 후속조치
- '09.1 : 한 · 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의 대한 진출지원 합의
- '09.5 : 대통령 중앙아 순방계기 우즈벡, 카자흐 등 주요 국가별 비즈니스포럼 개최시 상호 보완적인 다양한 협력사업 확대 제의
- '09.6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협력강화 합의

- '10.12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 합의
- '11.5 : 제1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실무 T/F 회의 개최
- '11.7 : 대통령 아프리카(남아공, DR콩고, 에티오피아) 순방
- '11.8 : 대통령 카자흐, 몽골 순방, 제2차 한-미 산업협력위 개최
- '11.10 : 제2차 한-인니 경협 실무 T/F회의, 한-몽골 자원협력위
- '11.11 : G20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담
- '11.12 : 제3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 제5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
- '12.01 : 한-중 정상회의, 제4차 중남미 경제협력간담회 개최
- '12.02 : 대통령 중동, 중부유럽(터키, 헝가리) 순방, 제4차 한-헝가리 산업협력위, 제1차 한-인니 경제협력위
- '12.04 : 한-베네수엘라 자원협력위
- '12.05 : 한-중-일 정상회의, 한-미얀마 정상회의, 제9차 한-알제리 경협 T/F회의 개최
- '14.06 : VIP 방우 정상회담시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사절단 파견 등 지원 협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양자산업협력	74.1	69.7	71.2	72.0	7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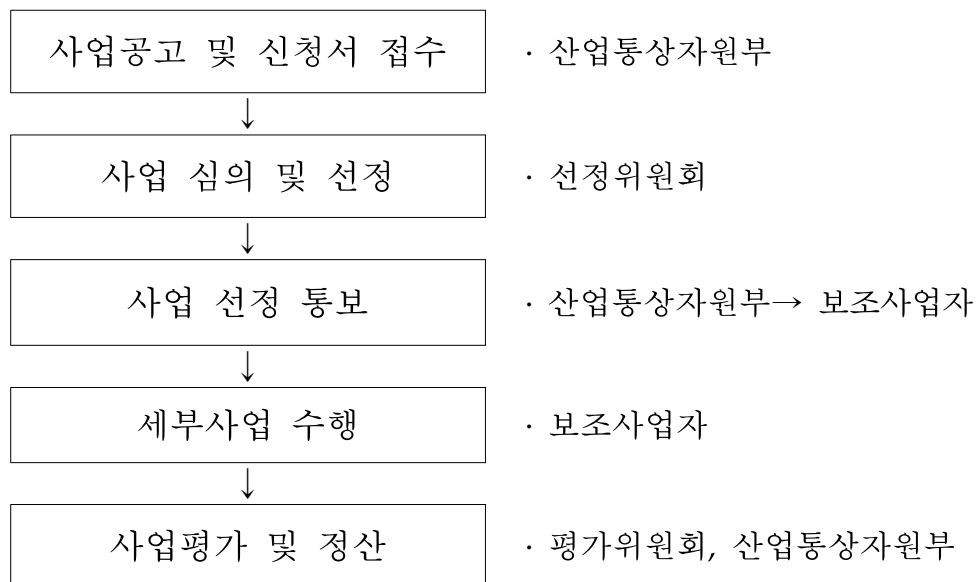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74.1 ()	()	()	74.1 ()	74.1 (68.1)	()	()
'14년	69.7 ()	()	()	69.7 ()	69.7 (64.3)	()	()
'15년	71.2 ()	()	()	71.2 ()	71.2 (68.4)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KOTRA 고유사업과 중첩되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 (후속조치) KOTRA 고유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KOTRA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간 또는 민관 공동 협력채널을 통한 협력기반 조성 및 경험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
- (2013년결산 산업위 검토보고서) 연간 사업계획을 정상회담·고위급 순방지역 중심으로 구성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전략적이나,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지역별로 예산을 안배하고 이후 지역별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자를 선발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장기협력이 필요한 사업과 단기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 하되, 단기사업은 지역별 안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장기협력 필요사업은 사업자 선정 등에서 연속성을 부여하여 성과를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후속조치) 국가별 협력과정에서 도출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하는 단기사업과 전략적 운용이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구분·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효과적 운용방안을 마련·추진하겠음
- (2017년예산 산업위 검토보고서) 사업수행자의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 보조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보다 면밀히 수행할 필요
 - (후속조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16.10.7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개정)
 - * 불성실 보조사업자 제재(사업비 환수 및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사업 변경시 사전승인 절차 준수,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등
 - 향후 보조사업자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고하고, 사업추진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관리 철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 단, 한일산업협력사업은 '92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 한일재단, 일한재단을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한일재단이 사업주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8,070	8,790	11,894	3,104	35.3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1900 - 1931 - 302

* 담당자 : 통상협력정책국장(강명수), 통상협력총괄과장(김기준, 044-203-5680), 사무관(김현정, 568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요구에 대응하여 산업통상협력 지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창출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우즈베크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 6,194백만원

- 우즈베크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섬유 기계·원단제조·의류기업의 생산·수출거점을 구축

②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 : 2,250백만원

- 베트남과의 트랙터 공공 개량연구 및 시범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지원

③ 우즈벡 농기계 R&D센터 : 1,800백만원

- 농기계 부속작업기(파종기, 이앙기 등) 개량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

④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 650백만원

- 우리 기업의 개도국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이 개도국 기업의 생산현장을 방문, 애로기술을 진단·지도

⑤ 산업개발협력기획 : 1,000백만원

- 개도국과의 산업발전과 우리기업의 개도국 시장 진출지원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사업 발굴·기획

□ 지원 필요성

- 신흥국가의 고성장에 따라 대형 인프라 사업 수요 증대 등 내수 시장 확대에 신흥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
 - 또한 신흥국들은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풍부한 자원부존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잠재적 시장임에 분명함
- 한편, 신흥국과의 산업자원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사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따라서, 원전·플랜트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 지원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8,070	8,790	11,894	3,104	35.3
▪ 우즈베크 섬유테크노파크조성	2100	4,040백만원 TP 건축 : 3,642백만원 (계약금), 교육훈련 : 100백만원 사업운영비 : 300백만원	6,194백만원 TP 건축 : 3,642백만원 (건축 중도금, 감리 등), 교육훈련 : 200백만원, 기자재 : 2,052 백만원 사업운영비 : 300백 만원	2,154	
▪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	590	1,600백만원 농기계 개량 : 1,000만 원, 농기계 보급 : 300 백만원, 유지보수 센터 조성 : 100백만원, 사업 운영비 : 200백만원	2,250백만원 농기계 개량 : 500백만원, 농 기계 보급 : 860백만원, 교육 훈련 : 130백만원, 유지보수 센터조성 : 560백만원, 사업 운영비 : 200백만원	650	
▪ 우즈베크 농기계 R&D센터	-	1,100백만원 기자재 : 750백만원(설계 장비 550백만원, 용접 및 조립 22백만원, 시험 분석 178백만원)	1,800백만원 기자재 : 1,250백만원 (유틸 리티 417백만원, 공작기계 825백만원, 시험분석 8백만 원)	700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	650백만원(5개국×130백 만원)	650백만원(5개국×130백만원) (이세안 등 5개국)	-	
▪ 산업개발협력기획	600	1,400백만원 타당성조사800백만원 사전기획600백만원	1,000백만원 타당성조사400백만원 (2개국 ×200백만원)사전기획600백만 원 (6개국×100백만원)	△400	
☐ 비목(합계)	8,070	8,790	11,894	3,104	35.3
○ 민간경상보조(320-01)	5,970	8,790	11,894	3,104	35.3
○ 출연(350-01)	2,100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상 외교, 양국간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원하
기로 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
 - 지원사업의 적시성 있는 추진을 통해 상대국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에 기여
-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F/S 등), 관련 기술 지원, 인력
교육 지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된 지원 사업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개발협력(프로젝트): 67.4억원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6.5억원 ▪ 산업개발협력기획: 14억원
'17	1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개발협력(프로젝트): 102.4억원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6.5억원 ▪ 산업개발협력기획: 10억원 ▪ 마스터플랜수립지원 : 10억원
'18	1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개발협력(프로젝트): 127.3억원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20억원 ▪ 산업개발협력기획: 15억원 ▪ 마스터플랜수립지원 : 20억원
'19	2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개발협력(프로젝트): 178.8억원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20억원 ▪ 산업개발협력기획: 15억원 ▪ 마스터플랜수립지원 : 20억원
'20	2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개발협력(프로젝트): 178.8억원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20억원 ▪ 산업개발협력기획: 15억원 ▪ 마스터플랜수립지원 : 2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및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한-베트남 산업협력 확대를 계기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신설 · 운영
 - * 베트남 등 개도국 대상 프로젝트, 초청연수, 개발컨설팅 등 사업 지원
 - * 몽골 에너지자원협력 지경부(한국)-광업에너지부(몽골) MOU 체결
 - * 한-캄보디아 NPCC와 기술협력 MOU 체결('11.5)
 - * 한-에티오피아 섬유기술협력 MOU 체결('11.11, 한 지경부- 산업부)
 - * 우즈베크 태양광 에너지 개발 협력을 위한 MOU체결('13.12, 산업부-재무부)

- 개도국의 산업성장 지원과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지원강화를 위한 Win-Win형 산업 통상 ODA 추진

- * 제1차 산업통상 ODA 마스터플랜 수립('14.1), 프로젝트 중심의 산업통상 ODA 사업구조 개편('14.3)
- * 제2차 산업통상 ODA 마스터플랜('16.3)을 통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수 있는 Win-Win형 사업모델 수립

- 개발협력 4대구상 중 과학기술혁신 구상 시범사업 지정 ('16.2)

- * 개발협력 4대구상 과학기술혁신(STI) 시범사업 : 우즈벡 섬유TP 조성 (기재부(KSP), 미래부(혁신센터) 등 유관부처와 협업 예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56.0	66.0	80.7	87.9	118.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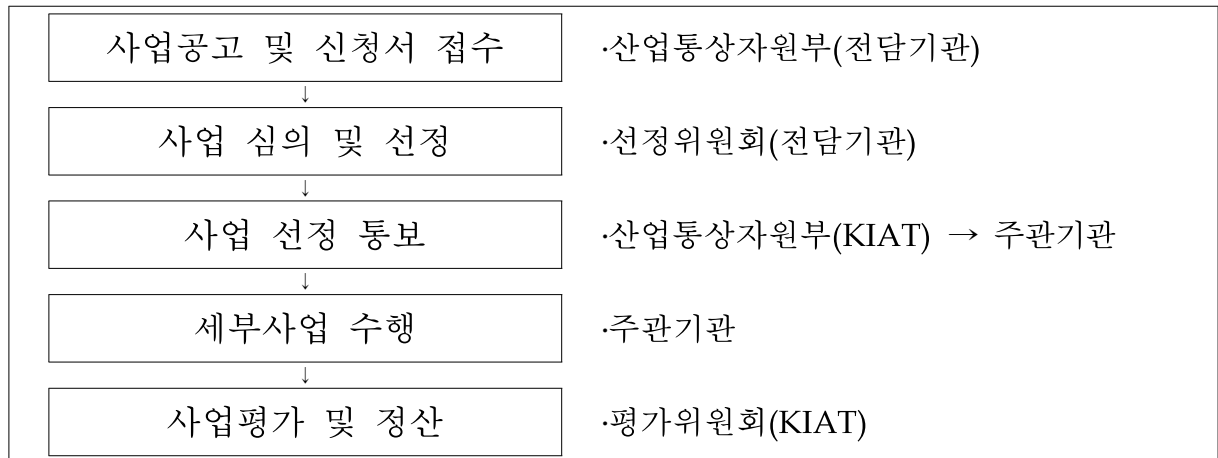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56.0 ()	()	()	56.0 ()	56.0 (56.0)	()	()
'14년	66.0 ()	()	()	66.0 ()	66.0 (66.0)	()	()
'15년	80.7 ()	()	()	80.7 ()	80.7 (80.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5년 정부보조금 사업평가 :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69	85	79	△6	△7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1900 - 1932 - 402

* 담당자 : 통상협력정책국장(강명수), 동북아통상과장(조수정, 044-203-5690), 사무관(박근형, 569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개최를 내실화하여 3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마련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한중일 통상협의체 운영·지원 : 79백만원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및 고위실무자급 협의체, 관련 국내외 정부 간 업무협의 지원 : 48백만원
- 공식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한중일 협력 합의사항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발간 : 8백만원
- 관련 회의 및 협의체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 14백만원
- 업무추진비 : 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로서, 3국의 산업분야 정책 공조 및 통상 현안 논의
- 특히 한중일 FTA 시대를 맞아, 장관급 회의 뿐만 아니라 고위 실무자급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통상현안 해결 및 협력사업 진행 필요
- 우리기업들의 中·日 시장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3국간 경제협력으로 중견·중소기업의 동북아 시장 확대진출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한중일 통상협의체 운영지원	69	85	79	△6	△7
□ 비목					
▪ 운영비(210)	57	60	56	△4	△6
▪ 여비(220)	-	15	14	△1	△6
▪ 업무추진비(240)	12	10	9	△1	△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의 연례 개최
 - '한중일 통상분야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를 통해 통상협력 강화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역내 경제협력 확대 추진
 - 우리기업의 동북아 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기 진출 기업들에 대한 경제·통상 관련 정보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0.85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17	0.79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18	1.50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19	1.50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20	1.50	▪ 한중일 통상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통상협력국
 - * 10조 각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영업활동 및 기술협력지원
 - * 11조 각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관련 협의회 운영
 - * 12조 각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 조정 등

○ 추진경위

- 본 사업은 '98년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통상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 '1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으로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어, 외교부 통상투자진흥강화 및 현안분쟁관리 일부 예산 이체
- '02년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등 협의회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1.22	1.0	0.95	0.85	0.7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도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총 예산의 17.2% 집행
 - 전용(3백만원) :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구축
 - 불용(98백만원) : 한일 및 중일간 외교관계 악화로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발생, 또한 정부 세수부족에 따라 감사원 지시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등
- 2014년도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총 예산의 30% 집행
 - 불용(70백만원) : 한일 및 중일간 외교관계 악화 지속으로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발생 및 정부 세수부족에 따라 감사원 지시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등
- 2015년도 한중일통상협력기반구축 총 예산의 70% 집행
 - 불용(26백만원) : 한중일 통상장관회담 및 국장급회의가 재개, 개최되어 예산 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22		△0.03	1.19	0.21		0.98
	()	()	()	()	()	()	()
'14년	1			1	0.3		0.7
	()	()	()	()	()	()	()
'15년	0.95			0.95	0.69		0.26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산집행이 부진함(국회 산업위 조경태 의원 등)
 - 지난 3년간 이례적인 한-일, 중-일간의 정치관계 악화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으나, '16.10.29. 동경에서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1) 사업목적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및 ‘한중일 통상분야 고위실무자 회의’ 연례 개최(참석)를 통한 통상협력 강화 및 역내 경제협력 확대 추진
- 우리 기업의 동북아 시장개척 활동 지원 및 진출 기업에 대한 경제·통상 정보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조항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4항
 - (2호)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3호)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 (4호) FTA를 제외한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 추진경위
 - 1998년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통상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 201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으로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
 - 2002년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등 3국간 경제협력 고위협의체 운영

통상교섭실

통상교섭실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936	6,565	6,433	△132	△2
○통상분쟁대응	997	2,000	3,540	1,540	77
소계	6,933	8,565	9,973	1,408	16.4
총계	6,933	8,565	9,973	1,408	16.4

자유무역협정체결및 후속조치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자유무역협정체결및 후속조치	5,936	6,565	6,433	△ 132	△2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900 - 1937 - 401

* 담당자 : FTA정책관(여한구), FTA정책기획과장(이경호, 044-203-5740), 주무관(이장석, 044-203-574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2. 사업목적

- FTA 협상(체결·이행), 정책 수립 등을 통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확보 및 안정적 교역·투자 확대
 - 산업 통상형 FTA 추진을 통해 업계 실질이익 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에 기여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FTA협상(체결) (2,612백만원)

-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FTA**, 한-이스라엘 FTA*** 등 진행 중인 양자간 FTA 협상 체결 추진

* '16.11월 한-중미 FTA 실질타결 선언

** '15.8월 한-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16.12월 한-이스라엘 제2차 협상 논의

○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FTA 개선 등 기체결 FTA 개선 협상 추진

* '16.3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청회 개최

○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등 신흥유망시장국가와의 FTA 추진 여건 조성

[VIP 지시사항, '15.1.15 부처업무보고서] “FTA체결규모가 전세계 GDP 73%를 넘었지만 여기에 만족할게 아니라 앞으로 개척해야 될 FTA 시장이 27%나 남았구나 하는 진취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제는 중남미와 중동, 유라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 를 지시

* 협상보조 인건비 (165백만원), 운영비(자료발간, 법률자문 등) (962백만원), 임차료(518백만원), 여비(612백만원), 업무추진비(110백만원), 정책연구비(230백만원), 고용부담금(14백만원), 복리후생비(1백만원)

② FTA 이행 및 후속조치 (1,185백만원)

○ 52개국과 15건의 FTA 발효('16.12월 기준)에 따른 협정문 이행 및 후속조치

- 한-중국, 한-베트남 FTA 등 기발효 FTA 증가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에 적시 대응

* 운영비(자료발간, 법률자문 등)(490백만원), 임차료(140백만원), 여비(310백만원), 업무추진비(60백만원), 정책연구비(185백만원)

③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470백만원)

○ 3단계 번역검독 시스템에 따라 번역·검독 기능 수행

1단계	⇒	2단계	⇒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초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한글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한글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표 번역의뢰 등 외부 기관의 조력을 거쳐 협상담당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단, 관계부처 실무 의견을 참조하여 통상 법무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관(법률회사나 관세법인 등)자문 등을 통해 통상 법무과가 작성 및 법제처 심사

* 번역전담 인건비(에디터)(125백만원), 번역검독 외부자문(292백만원), 번역관련 시스템 유지보수(5백만원), 여비(30백만원), 업무추진비(5백만원), 고용부담금(12백만원), 복리후생비(1백만원)

④ 다자 FTA 등 지역경제통합논의 대응* (2,166백만원)

* 종전 “동아시아 경제통합논의 대응체제구축” 내역사업명을 변경

-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기존 ASEAN+1 FTA를 보완하고, 역내 기체결 FTA 및 새로운 FTA(한-중-일 FTA 등)들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 ASEAN(주도)+ 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한-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 등 메가(Mega) FTA 논의 대응

* 운영비(자료발간, 법률자문 등)(811백만원), 임차료(540백만원), 여비(551백만원), 업무추진비(114백만원), 정책연구비(1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국제적 흐름 추세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 중
 -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 정책 추진은 기존의 해외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936	6,565	6,433	△132	△2
▪ FTA협상(체결)	2,622	3,239	2,612	△627	19
▪ FTA이행 및 후속조치	975	1,112	1,185	73	7
▪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864	865	타사업이관	-	-
▪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463	531	470	△61	△11
▪ 다자FTA등 지역경제 통합논의 대응	1,012	818	2,166	1,348	165
☐ 비목	5,936	6,565	6,433	△132	△2
▪ 기타직보수(110-02)	0	234	0	△234	△100
▪ 상용임금(110-03)	-	-	245	245	-
▪ 일용임금(110-04)	263	45	45	0	0
▪ 일반수용비(210-01)	2,582	3,082	2,560	△522	△17
▪ 임차료(210-07)	494	808	1,198	390	48
▪ 복리후생비(210-12)	0	0	2	2	-
▪ 위탁사업비(210-15)	790	0	0	0	0
▪ 국내여비(220-01)	26	35	33	△2	△6
▪ 국외여비(220-02)	1,043	1,500	1,470	△30	△2
▪ 사업추진비(240-01)	313	295	289	△6	△2
▪ 연구개발비(260-00)	419	0	0	0	0
▪ 일반연구비(260-01)	-	-	565	565	-
▪ 정책연구비(260-02)	0	565	0	△565	△100
▪ 연금지급금(320-03)	6	1	0	△1	△100
▪ 고용부담금(320-09)	-	-	26	26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및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
 - 한중일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 보호
 -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등 다자간 지역 경제통합 논의 대응
 - 신흥국가와의 FTA 적극 추진 및 중동 등 자원부국 FTA 추진여건 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65.65	▪ FTA협상체결(32.39), FTA이행 및 후속조치(11.12),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8.18)
'17	61.05	▪ FTA협상체결(27.79), FTA이행 및 후속조치(11.12),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8.18)
'18	57.39	▪ FTA협상체결(24.13), FTA이행 및 후속조치(11.12),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8.18)
'19	54.52	▪ FTA협상체결(21.26), FTA이행 및 후속조치(11.12),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8.18)
'20	55.00	▪ FTA협상체결(21.74), FTA이행 및 후속조치(11.12),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8.65),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3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대응체제 구축(8.1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통상절차법(2012.7.18 발효)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 제4조 및 제17조

○ 추진경위

- FTA 추진 정책 시행
 -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 정책을 추진기로 결정
 - 2003년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FTA 체결 사업 본격 추진
 - 2004년 3월 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정
 -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로드맵’ 보완
- FTA 추진 조직 확대
 - 2004년 10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내에 자유무역협정(FTA)국을 신설기로 결정

- 2008년 3월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내 자유무역협정정책국과 자유무역협정교섭국으로 FTA 추진 조직을 개편
- 2012년 1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2012.1.17)
- 통상기능 일원화에 따라 FTA 추진 조직 이관
-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로 조직 및 예산 이체
- 2013년 6월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기조로 한 ‘신통상로드맵’ 발표
- 2013년 9월 FTA체결 및 이행협약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전부개정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령(2013.9.24)
- 2015년 4월 ‘신평FTA추진전략’ 발표(2015.4.3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57.69억	54.49억	59.75억	65.65억	64,33억

(2) 최근 3년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 결산표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57.69	0.4	1.57	59.66	52.39	3.27	4
	(57.69)	(0.4)	(1.57)	(59.66)	(52.39)	(3.27)	(4)
'14년	54.49	3.27	-	57.76	53.53	1.47	2.76
	(54.49)	(3.27)	(-)	(57.76)	(53.53)	(1.47)	(2.76)
'15년	59.75	1.47	-	61.22	59.36	0.68	1.18
	(59.75)	(1.47)	(-)	(61.22)	(59.36)	(0.68)	(1.1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지적사항	대책
(‘12년 국회 외통위 2011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 한미, 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로 인한 전용 과다를 지적 -이에 따른 여타 FTA 추진 지연 문제 언급	(기반영) · 번역검독 시스템 정비·개선 예산을 2012년 예산에 반영 - 협정문 검독을 위해 예기치 않은 검독·자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 전용이 불가피했음을 설명
(‘13년 국회 산업위 2012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 내역사업 예산간 편성 당시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 있음을 지적	(기반영) · 편성 당시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사업 특성상 협상 상대국 입장, 협상 진행상황 (협상 중단·재개 등), 분쟁발생여부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 있음을 설명
(‘14년 국회 산업위 예산심의) · 집행실적이 없는 FTA이행분쟁패널대응 사업을 유사기능사업인 FTA이행및후속 조치사업과 통합할 필요	(기반영) · ‘15년부터 FTA이행및후속조치사업과 FTA 이행분쟁패널대응사업 예산을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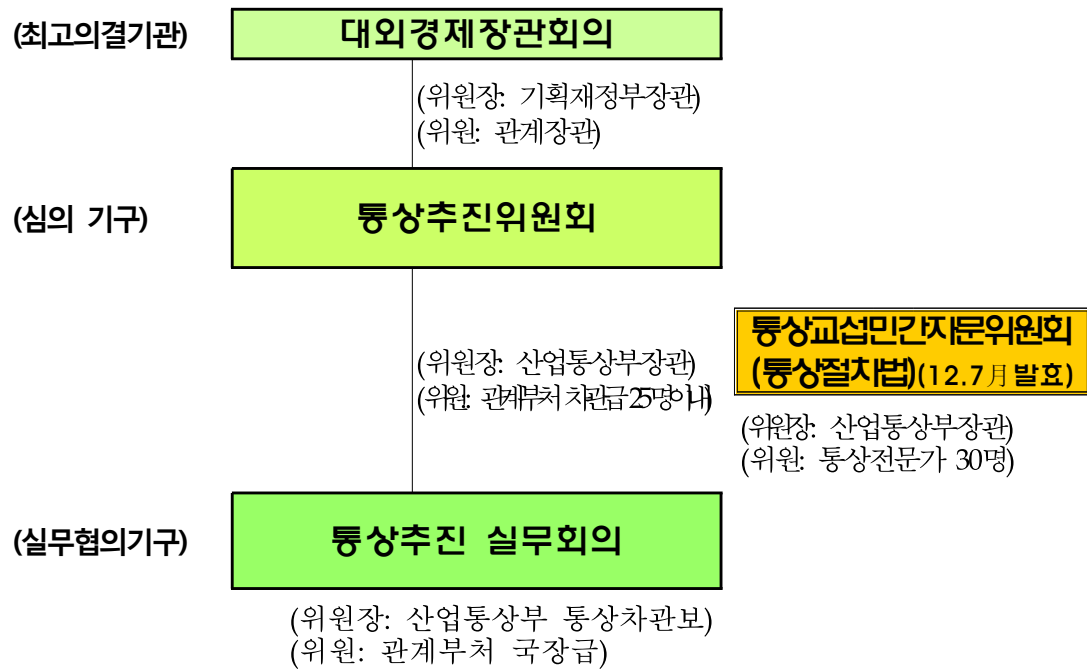
○ 평가결과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2015 재정사업자율평가(2012-2014회계년도 평가) 기재부 평가결과, “보통” 등급 판정	
□ 평가결과 (보통)	
사업단계	주요 평가 내용
사업계획	○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음
성과계획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있으며 목표치 설정근거가 구체적임
관 리	○ 집행실적이 어느정도 개선되었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해결이 다소 미흡함
성 과	○ 내·외부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한 실적이 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통상분쟁대응사업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통상분쟁대응	997	2,000	3,540	1,540	77

* 사업 코드 : 110-113-1900-1936-401

* 담당자 : FTA정책국(여한구국장), 통상법무과(신정훈, 044-203-5770), 주무관(하령혜, 044-203-577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9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과

2. 사업목적

-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 하고, 우리 정부 피소시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통상 이익 보호
- 우리나라 및 교역 상대국의 경제 및 통상 관련 조치의 WTO 규정 위배 여부 상시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조치 강구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WTO 당사자 분쟁 대응: 3,207백만원

- 사업내용: 우리나라가 직접 제소·피소국으로 참여하는 WTO 분쟁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당사자 분쟁 1건이 추가 발생, 이례적으로 4건*의 당사자 분쟁 동시 진행중

* 대응건수 : ('12) 1건 → ('13) 1건 → ('14) 2건 → ('15) 3건 → ('16) 4건

－ 산출근거:

- 자문료(3,120백만원) ※ 분쟁별 정부부담률 상이

$$\frac{(400\text{백만원} \times 0.4 \times 0.5)}{\text{①}} + \frac{(800\text{백만원} \times 0.3)}{\text{③}} + \frac{(800\text{백만원} + 400\text{백만원})}{\text{④}} + \frac{800\text{백만원}}{\text{⑤}} + \frac{800\text{백만원}}{\text{⑥}}$$

②

= 3,120백만원

- * ① (WTO 한-미 세탁기 이행분쟁) 비용분담약정에 따른 법률자문료 정부부담분 40%
- ② (WTO 한-미 세탁기 이행분쟁) 하반기 이행분쟁 대응예산으로 평균 법률자문료 및 소요기간의 50%만 적용
- ③ (WTO 한-미 유정용강관분쟁) 비용분담약정에 따른 법률자문료 정부부담분 30%
- ④ (WTO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분쟁) 법률자문료+기술자문료, 정부 전액부담
 - － WTO 분쟁상 최초로 진행중인 방사능관련 분쟁으로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시간·인력투입을 위한 기술자문료(약 400백만원) 필요
- ⑤ (WTO 일본 밸브 분쟁) 법률자문료, 정부 전액부담
- 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철강, 화학업계 등 WTO 제소 요청이 증가에 따른 추가 분쟁수요 대응 예산

- 출장비(75백만원): 대책회의를 위한 국내출장여비(6백만원) 및 WTO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여비(69백만원, 12회 기준)
- 법률전문가, 외국 정부인사, 업계인사와의 업무협약(12백만원)

② 기타분쟁대응: 278백만원

- － 사업내용: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아닌 주요 WTO 분쟁에 3자로 참여, 우리입장 개진 및 기타 통상이슈 관련 법률자문 등을 통한 통상이익 보호
- － 산출근거:
 - 법률자문료(194백만원)
 - 출장비(76백만원): 대책회의를 위한 국내출장여비(1백만원) 및 WTO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여비(75백만원, 12회 기준)
 - 법률전문가, 외국 정부인사, 업계인사와의 업무협약(8백만원)

③ WTO/FTA 분쟁 모의재판: 40백만원

- － 사업내용: 통상분쟁에 대한 관심제고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의 목적

으로 2010년부터 (사)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WTO/FTA 모의 재판대회 개최

* 금년도에는 8.27-28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

－ 산출근거:

- 채점위원, 자문위원, 패널리스트, 운영요원 등 수당 및 사례비(7백만원)
- 상패, 상금 및 소모품 구입(16백만원)
- 리셉션, 오만찬, 도시락(17백만원)

④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15백만원

－ 사업내용: 통상법 포럼 개최를 통한 전문가들간 통상현안 협의 및 네트워크 구축

－ 산출근거:

- 통상법 포럼 개최(15백만원): 2.5백만원 x 6회

구 분	'16년 예산	'17년 요구
□ 통상분쟁대응	2,000	3,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분쟁대응 1,667('16) → 3,20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 1,580 ▪ 국내여비 6 ▪ 국외여비 69 ▪ 업무추진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 3,120 ▪ 국내여비 6 ▪ 국외여비 69 ▪ 업무추진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분쟁대응 278('16) → 27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 194 ▪ 국내여비 1 ▪ 국외여비 75 ▪ 업무추진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 194 ▪ 국내여비 1 ▪ 국외여비 75 ▪ 업무추진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모의재판 40('16) → 4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사례비 7 ▪ 상금, 소모품구입 13 ▪ 오만찬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사례비 7 ▪ 상금, 소모품구입 16 ▪ 오만찬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분쟁대응기반마련 15('16) → 1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법포럼개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법포럼개최 15

□ 지원 필요성

(WTO 당사자분쟁 대응 / 기타 분쟁대응)

- 통상분쟁의 경우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 이익에도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바, 적극적·효과적 대응 필요
-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향후 우리와 관련된 WTO/FTA 분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WTO/FTA 분쟁 모의재판)

- WTO/FTA 분쟁 모의재판은 통상분야 젊은 인재들을 발굴, 통상분쟁 대응 내실강화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하고, 통상 이슈에 대한 관심 제고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

(통상법포럼)

- 산업부, 학계 전문가, 실무자(변호사), 관련 업계 등이 참석, 세계 통상법 흐름을 이해하고, 통상정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외부와의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통상대응능력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통상분쟁대응	997	2,000	3,540	1,540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당사자 분쟁 대응 (분쟁별 약정에 따른 지문료+출장비 등 기타비용) 	668 법률자문등 561 여비 87 업추비 20	1,667 법률자문 1,580 (800×40%)+(800×30%)+(800+220) 여비 75 업추비 12	3,207 법률자문 3,120 (400×40%×50%)+(800×30%)+1,200+800+800 여비 75 업추비 12	1,540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분쟁대응(WTO 3자참여 분쟁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지문료+출장비 등 기타비용) 	249 법률자문등 203 여비 34 업추비 12	278 법률자문 194 (20×9건+(5×2건)+(2×2건) 여비 76 업추비 8	278 법률자문 194 (20×9건+(5×2건)+(2×2건) 여비 76 업추비 8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모의재판(행사) 	52	40	행사운영비 23	0	0

운영비용+오만찬비용)	행사운영비28 여비 24	행사운영비20 오만찬비용20	오만찬비용17		
▪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통상 법 포럼 개최)	15 (214X7회)	15 통상법 포럼 개최 (2.5X6회)	15 통상법 포럼 개최 (2.5X6회)	0	0
▪ 통상법 아카데미(통상법 아 카데미 개최)	13 (1.3X10회)	- (중료)	-	-	-
□ 비목	997	2,000	3,540	1,540	77
○ 일반수용비(210-01)	803	1,797	3,340	1,543	85.8
○ 국내여비(220-01)	8	7	7	-	-
○ 국외여비(220-02)	137	144	144	-	-
○ 업무추진비(240-01)	49	52	49	△3	△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쟁이 발생시, 적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
 - 국가간 통상분쟁은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분쟁 외에도, 검역·환경·기술규제 등 분쟁이슈의 다양화에 대한 대비도 중요
- 통상법 포럼, WTO/FTA 모의재판 등 현재 추진중인 행사들의 활성화 및 내실 강화를 통한 전문가 풀을 확보 및 산업-통상간 연계성 강화로 중장기적인 통상대응능력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18.0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5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7	3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33.4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5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8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15.0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3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19	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12.6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3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2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12.2 ▪ 분쟁대응 관련 출장 1.3 ▪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 제4조, 제17조 및 WTO 분쟁해결 절차규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추진경위

- 사업 신설연도: 1999년

※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회원국간 무역 분쟁은 WTO 분쟁 해결절차 규정(DSU)에 의거,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분쟁대응 사업이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통상분쟁대응	7.8	8.5	10.0	20.0	35.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전용 △0.8억원, 불용 0.1억원)

- 전용 △0.8억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비밀문서 시스템 구축
- 불용 0.1억원: WTO 분쟁일정 지연 및 기체결 FTA 관련 분쟁 미발생

○ 2014년(불용 0.1억원) : 기재부 지침에 의한 강제불용 및 집행잔액

○ 2015년(불용 3백만원) : WTO/FTA모의재판 오만찬 절감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7.8 (7.8)	- ()	Δ0.8 (Δ0.8)	7.0 (7.0)	6.0 (6.0)	()	1.0 (1.0)
'14년	8.5 (8.5)	- ()	- ()	8.5 (8.5)	8.4 (8.1)	- ()	0.1 (0.1)
'15년	10 (10)	- ()	- ()	10 (10)	9.97 (9.97)	()	0.03 (0.0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각 내역사업의 분류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편성·집행할 필요
(‘13년 결산 산업위 소위)

(우리부 입장)

- 통상분쟁대응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분쟁 동향 파악,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소요되며, 이는 직접적인 분쟁대응 보다는 중장기적 분쟁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인바, 그간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내역사업으로 편성·운영해옴

※ 통상분쟁대응 사업은 △WTO 당사자 분쟁 대응, △기타분쟁대응, △WTO/FTA 모의재판,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 향후 보다 직접적으로 분쟁대응과 관련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사업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목을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토록 하겠음(지적사항 수용)

- WTO 당사자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인바, 소송비용 분담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17년 편성 산업위 소위)

(우리부 입장)

- WTO 당사자분쟁 발생시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와 협의하에 분담율을 산정, 약정체결 후 소송비용을 분담

- 증가추세인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바, 분쟁성격(반덤핑, 상계관세, 제소/피소 등), 기업상황(대기업, 중소기업, 단일/복수 기업 등), 파급효과(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금년12월중 지침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지적사항 수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WTO 분쟁해결 절차도

참고

WTO 분쟁해결 절차도

